

會計情報의 公開範圍에 관한 研究

南 相 午

| 目 次 | |
|-----------------------------|--|
| I. 序 論 | |
| II. 會計情報의 公開와 그 本質에 관한 考察 | |
| 1. 公開의 目的 | |
| 2. 公開의 對象 | |
| 3. 公開量의 決定 | |
| III. 公開範圍의 擴大와 그 原因에 관한 考察 | |
| 1. 傳統會計에 대한 批判에서 출발 | |
| 2. 會計情報公開의 새로운 토픽들 | |
| 3. 公開의 最大範圍 | |
| IV. 公開事項의 選擇 | |
| 1. 公開事項의 選擇基準 | |
| 2. 公開事項의 選擇責任 | |
| V. 會計情報의 公開實態에 대한 分析와 評價 | |
| 1. 會計情報의 公開歷史와 實態 | |
| 2. 우리나라의 會計規定에 대한 批判 | |
| 3.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監查意見의 分類와 分析 | |
| VI. 結論과 建議 | |

I. 序 論

會計資料는 누구를 위하여 작성되고, 무엇 때문에 작성되는 것일까?

많은 企業經營者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어느 經營者는 利益配當을 하기 위하여, 稅金을 납부하기 위하여, 企業所有主나 稅務署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會計資料는 기업을 둘러싼 投資者, 債權者, 所有主, 證券分析家, 消費大衆 등 기업의 利害關係者인 많은 財務諸表利用者들(financial statements users)로 하여금 經濟的 意思決定(economic decision-making)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1973年 공표된 美國公認會計士會의 研究報告書인 「財務諸表의 目的」(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에서 밝히고 있다.⁽¹⁾ 이러한 會計目的의 定義는 會計資料가 經營意思決定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財務諸表利用者들이 이용할 수 있는 會計情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附設 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專任講師。

(1) AICPA,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New York: AICPA, October, 1973)

報가 되어야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會計情報의 공개는 단순히 財務諸表의 공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모든 公開手段인 註釋, 註記, 附屬明細書, 監查報告書가 財務諸表를 源泉的 資料로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會計資料의 總體的 集合體인 財務諸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會計情報의 공개문제는 최근까지도 소홀하게 생각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成長歷史가 一淺하며 家族企業의 성격을 脱皮하지 못하고 18·9세기에 風靡하였던 會計思想인 資本主義理論(proprietary theory)이 아직도 우리나라 企業界를 지배하고 있는 基本的 思考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資本主는 기업의 運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업의 利害關係者 중에서 資本主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므로 餘他의 利害關係者에 대해서는 기업의 機密인 會計情報を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기업의 利害關係者層이 두터워지고 기업경영이 점차적으로 복잡화됨으로써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기업에 獨自의法人格을 賦與하는 企業實體理論(entity theory)이 지배적인 思考가 됨으로써 기업의 會計情報を 가급적 完全히 公開(full disclosure)하는 것을 美德(virtue)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美國, 英國, 카나다, 濠洲 등 會計學發達의 年祚가 비교적 오랜 국가에서는 會計情報의 공개에 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엄격한 規制條項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規則(Regulation) S-X에는 많은 公開事項이 규정되어 있고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발표해 오던 會計調查公報(ARB,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意見書(Opinions), 報告書(Statements)와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발표하는 報告書(FASB Statements) 등 일련의 會計規程集에서는 會計原則이나 會計方法을 규정하면서 반드시 公開事項을 구체적으로 明記함으로써 會計情報의 공개를 중요시하고 있다.

本稿는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目的研究團(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과 會計原則審議會(APB, Accounting Principles Board)의 第4報告書(APB Statement No. 4)⁽²⁾의 定義를 기초로 會計의 目的을 財務諸表利用者的 經濟的 意思決定을 돋는 데 두고 會計情報의 公개를 둘러싼 諸問題에 대해서 分析的 考察을 하고자 한다.

本稿의 研究範圍는 會計情報公開의 중심분야인 財務諸表의 註釋뿐만 아니라 財務諸表의

(2) AICPA, 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 Statement No. 4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New York: AICPA, 1970)

樣式(form), 配列(arrangement), 語彙(terminology), 註記(parenthetical information), 附屬明細書(supplemental schedule), 監查報告書(auditors' report), 營業報告書(business report), 事業說明書(prospectus)에 표시되는 公開事項까지도 포함한다.⁽³⁾ 그러나 이들 중에서 財務諸表註釋과 監查報告書는 會計情報의 公開手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會計情報의 公開問題를 다루고자 한다.

本稿의 研究目的은 첫째로, 會計情報의 公개에 관하여 公開의 目的, 公開의 對象, 公開量의 決定에 관한 公開의 本質을 考察하고자 한다. 둘째로, 최근 公開範圍의 擴大로 公開事項이 증가하는 趨勢에 있는데, 이러한 公開範圍의 擴大原因을 傳統會計의 發達過程과 관련시켜 究明하고, 公開事項의 最大範圍가 어디까지 擴大되고 있는지 探索해 보기로 한다. 셋째로, 會計情報의 洪水時代에 있어서 公開事項의 質的 選擇에 관련된 公開事項의 選定基準, 選定責任을 검토한다. 넷째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會計規定을 비교하여 監查報告書에 나타난 會計情報의 公開實態를 分析 評價한다. 마지막으로 會計情報의 公개에 관련된 改善策을 建議하는 것도 本稿의 研究目的의 하나이다.

II. 會計情報의 公開와 그 本質에 관한 考察

會計情報を 公개하는 目的(objectives)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하여 (for whom) 會計情報은 公개되어야 하는가? 얼마만큼(how much)의 會計情報가 公개되어야 하는가? 위의 세 가지 의문점은 會計情報を 公개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무닛츠(Moonitz),⁽⁴⁾ 헨드릭슨(Hendriksen),⁽⁵⁾ 버즈비(Buzby)⁽⁶⁾에 의하면 會計情報의 公開本質(nature of disclosures)의 問題인 것이다. 이를 公開本質은 公開事項을 決定하기 이전에 究明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1. 公開의 目的

會計情報を 公개하는 目의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현재까지 會計學者와 會計實務者간에 明確히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觀點에서 접근된 의견이 표시되고 있다.

첫째는, 會計情報의 公開目的은 財務諸表의 目的(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財

(3) 會計情報의 公開方法에 대해서는 서울大學校 韓國經營研究所刊, 「經營實務」(秋季號, 9卷 3號, 1975年 9月)에 실린 筆者の「企業利害關係者를 위한 財務情報의 公開」라는 글을 참고할 것

(4) Maurice Moonitz,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New York: AICPA, 1961), p.48

(5)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rev. ed.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70) pp. 559-562

(6) Stephen L. Buzby, "The Nature of Adequate Disclosure," *The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1974, pp.38-45

務會計의 目的 (objectives of financial accounting) 또는 會計의 目的 (objectives of accounting)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思考이다. 이러한 思考는 이들 目的이 定立되면 會計情報의 공개는 이들 目的을 구현하고 遂行(implement)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누가 특별히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會計目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會計情報의 공개를 云謂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思考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適正公開(adequate disclosure)의 개념은 公開目的으로부터 類推될 수 있는 것이며 公開事項의 결정은 目的觀이 定立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財務諸表의 目的에 관하여 가장 권위 있는 견해는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目的研究團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이 1973年 10月 발표한 「財務諸表의 目的」(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이란 報告書이다.⁽⁷⁾ 여기에는 財務諸表의 基本目的을 “經濟的 意思決定(economic decision-making)을 위한 有用한 情報의 提供”에 두고 있으며 “企業에 관한 情報는 주로 財務諸表에 의존하는 企業外部의 利用者들이 企業의 收益力(earning power)을 評價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는데 그 目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會計目的研究團에서는 企業의 財務諸表에 관련하여 11가지의 目的을 設定하고 있다. 이러한 定義가 示唆하는 바는 財務諸表作成의 目的이 단순히 記錄하거나 報告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財務諸表利用者의 필요에 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會計目的研究團의 研究報告書는 美國公認會計士會의 APB Statement No. 4와 美國會計學會(AAA,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의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SOBAT,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로부터 그 内容이 定立되기 시작한 것이다. APB Statement No. 4에서는 財務諸表의 基本目的을 “企業에 관한 量的 財務情報 提供하는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 財務情報은 財務諸表利用者에게는 有用한 것으로 특히 所有主나 債權者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⁸⁾

美國會計學會의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에서는 會計의 目的을 “限定된 資源의 利用에 대한 意思決定, 資源의 保全과 報告, 社會의 機能과 統制의 促進”에 두고 利用者指向的(user-oriented) 觀點에서 會計情報의 有用性을 강조하였다.⁽⁹⁾

그외에도 財務諸表의 目的에 관하여 美國의 公認會計士企業인 아더·앤더슨(Arthur Andersen & Co.)에서 研究報告書를 발표한 바 있다.⁽¹⁰⁾

(7) AICPA Study Group, *op. cit.*

(8) APB Statement No. 4, *op. cit.*, par. 73

(9)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 AAA, 1966), p.4

(10) Arthur Andersen & Co.,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Business Enterprises* (Chicago, Ill.: Arthur Andersen & Co., 1972)

이러한 모든 研究報告書를 종합하면 會計의 目的은 財務諸表利用者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合理的으로 할 수 있도록 適切한 情報(relevant information)를 提供하여야 한다는데 意見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會計目的을 定立하는데 있어서 財務諸表利用者는 단순히 企業의 財政狀態나 經營成果를 測定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收益力(earning power)과 같은 企業의 未來經營成果를豫測하고자豫測變數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는, 會計情報의 公開目的을 會計情報의 公開라는 概念的(conceptual) 定義에서 導出하고 있다. 무닛츠(Moonitz)는 「會計調查研究」(AR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에서 公準(postulate)의 하나로 公開表示를 들면서 “會計報告書는 報告書가 誤導되지 않도록 필요한 事項을 公開하여야 한다”(Accounting reports should disclose that which is necessary to make them not misleading.)고 하여 公開概念을 설명하고 있다.⁽¹¹⁾ 이 文章은 그후에 발표된 美國公認會計士會의 職業倫理規程(Code of Professional Ethics)⁽¹²⁾ 美國證券去來委員會의 規則 S-X⁽¹³⁾에서도 사용되어 “誤導되지 않도록”“(not misleading)이란 용어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文章에 의하면 會計情報의 公開目的은 企業利害關係者를 誤導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彙結된다. “誤導하지 않도록”이란 용어의 定義는 명확하게 내려진 바는 없지만 財務諸表가 일단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의하여 작성되면 “誤導하지 않도록”이란 의미에 附合된다는 것이 일반적 인 解이다.⁽¹⁴⁾ 이것은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따라 작성된 財務諸表를 財務諸表利用者가 읽으면 그 企業의 財政狀態·經營成果의 해석과 未來의 收益力を 測定하는데 있어서 財務諸表利用者들간에 비교적 類似한 見解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美國公認會計士會 會計節次委員會(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에서 발표한 「會計監查基準報告書」(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No. 1에서도 “會計情報의 公개에 있어서 適正性(adequacy)이란 財務諸表를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와 일치하여 작성함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다.⁽¹⁵⁾

어떤 事項을 公개하지 않으면 財務諸表利用者의 判断을 그르치게 하여 誤導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헨드릭슨(Hendriksen)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열거하

(11) Maurice Moonitz, *op. cit.*, p.50

(12) AICPA, *By-Laws-Code of Professional Ethics* (New York: AICPA, 1962) p.31

(13) SEC, *Regulation S-X Rule 3-06, Form and Content of Financial Statements* (Washington D.C.: SEC.) pp.5-6

(14) Eldon S. Hendriksen, *op. cit.*, p.560

고 있다. ⁽¹⁶⁾

- (1) 財務諸表利用者가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方法 중에서 선택된 方法
- (2) 前期와 다른 會計原則, 方法, 節次의 적용
- (3) 正常的 經營活動過程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事項
- (4) 기업의 利害關係者間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重要變更事項 또는 特別契約
- (5) 未來豫測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
- (6) 經營政策의 변경으로 기업에 관한 意思決定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

2. 公開의 對象

會計情報의 公開對象은 財務諸表利用者 또는 기업의 利害關係者가 된다. 財務諸表利用者에는 投資者, 債權者, 財務分析家, 政府機關, 稅務署, 證券去來所, 投資公社, 經營者, 從業員, 勞動團體, 顧客, 消費大眾, 供給業者, 經濟團體, 言論機關, 學界, 研究機關 등 많은 利害關係者가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財務諸表의 目的是 財務諸表利用者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有用한 情報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財務諸表利用者層이 누가 될 것인가를 分析하고 그들의 要求가 무엇인가를 個別적으로 檢討할 필요가 있다.

財務諸表利用者層의 區別에 대해서 무닛츠(Moonitz)는 “會計情報利用者를 개별적으로 区分(specific identification)함으로써 公開表示의 適正性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¹⁷⁾ 디바인(Devine)은 “公開表示의 對象이 되는 그룹을 구별할 필요성은 각 利用者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¹⁸⁾ 이들은 財務諸表utilization者를 구별하고 그들의 要求를 개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會計의 目的 또는 公開의 目的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떠한 財務諸表utilization者를 대상으로 會計情報を 公開할 것이나에 대해서 크립케(Kripke)는 “會計의 目的이란 投資者, 財務分析家, 證券業者, 經濟學者를 위하여 가장 有用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狹義의 定義를 내리고 있다.⁽¹⁹⁾ 그러나 美國會計學會의 「1957年改正版報告書」에서는 “財務諸表는 政府機關, 債權者, 勞動團體, 株主, 潛在的 投資者에게 有用하다. 政府機關과 債權者는 追加의 情報를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이 있고 一般大眾

(15) AICPA,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No.1*, “Codification of Auditing Standards and Procedures” (New York: AICPA, 1973), p.78

(16) Eldon S. Hendriksen, *op. cit.*, p.560

(17) Maurice Moonitz, *op. cit.*, p.48-49

(18) Carl T. Devine, “Some Conceptual Problems in Accounting Measurement,” Research in Accounting Measurement, edited by R. Jaedicke, Y. Ijiri and O. Nielson (Evanston, Ill.: AAA, 1966), p.17

(19) Homer Kripke, “The Objective of Financial Accounting should be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Serious Investor,” *The CPA Journal* pp.389-397

이 要求하는 情報는 株主나 潛在的 投資者가 요구하는 것과 類似하기 때문에 公開表示의 主要目的은 投資決定이나 經營者에 대한 統制를 행사하는데 적절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⁰⁾ 美國公認會計士會 APB Statement No. 4에 의하면 直接利害關係者(users with direct interest)와 間接利害關係者(users with indirect interest)로 나눈다.⁽²¹⁾ 前者は 企業에 直接적으로 利害關係를 갖는 人們로 所有主, 債權者, 供給業者, 經營者, 稅務署, 從業員, 顧客이 있다. 後者は 直接利害關係者를 돋거나 保護하는 機能을 갖는 人们로서 財務分析家, 證券去來所, 辯護士, 規制機關, 言論機關, 經濟團體, 勞動組合 등이 있다.

美國會計學會의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에서는 이들을 外部利用者(external users)라고 부르고 있다.⁽²²⁾

各 財務諸表利用者의 個別의인 要求가 확인되면 各 利用者別로 區別된 會計情報의 共通點을 찾아 最大公約數로 줄이거나 財務諸表利用者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優先順位를 정하여야 한다는 문제が 발생한다. 現時點에 있어서는 財務諸表利用者 중에서도 投資者, 債權者의 比重이 비교적 크므로 이들의 情報要求(information needs)를 중심으로 公開事項이 설정되는 경향이다.

公開事項의 表示에 있어서 어떠한 資質과 能力を 가진 人們을 대상으로 公開事項이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會計學者들간에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會計目的研究團의 「財務諸表의 目的」⁽²³⁾과 APB Statement No. 4⁽²⁴⁾에서는 目標利用者(target users)란 概念을 사용하고 있는데 “情報의 얻는데 있어서 限定位權限・能力・資源을 가진 人們이며 企業의 經濟活動에 관한 情報源泉으로서 主로 財務諸表에 의존하는 利用者”를 말하고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의 報告書에 의하면 目標利用者集團에 대해서 公開概念을 겨냥하고 있으며 財務諸表利用者의 共通의인 必要(common needs)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財務諸表utilization의 일반적인 定義에 대해서 財務諸表utilization의 專門的 知識(expertness)을 고려하여 여러 公開對象이 소개되고 있다. 모츠·샤라프(Mautz & Sharaf)⁽²⁵⁾는 專門의인 財務分析家(professional financial analyst)를, 코원(Cowan)⁽²⁶⁾은 제한된 능력을 가진

(20) AAA, 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Columbus, Ohio: AAA, 1957) pp. 7-9, 40-50

(21) APB Statement No. 4, *op. cit.*, par. 43-48

(22)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op. cit.*, p.20

(23) AICPA Study Group, *op. cit.*, p.17

(24) APB Statement No. 4, *op. cit.*, par. 46-47.

(25) Robert K. Mautz and Hussein A. Sharaf, *The Philosophy of Auditing* (Evanston, Ill.: AAA, 1961) p. 191

(26) T.K. Cowan, "A Pragmatic Approach to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968, p.99

平均投資者(average investor with limited skills)를 체코비치⁽²⁷⁾ (Chetkovich)는 標準讀者 (standard reader)란 概念으로 熟練된 利用者(skilled user)와 非熟練利用者(unskilled user)의 어느 중간지점에 있는 財務諸表利用者를 대상으로 會計情報의 公開에 있어서 技術的 문제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公開事項의 選定·表示方法에 있어서 念頭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 여기서 각 利害關係者의 情報要求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檢討하여 보자.

(1) 投資者

投資者(investor)는 現在의 投資者와 장래 株主가 되고자 하는 潛在的 投資者(potential investors)로 구분할 수 있다. 投資者は 일반적으로 株式의 購入—賣却—保留의 決定(buy-sell-hold decisions)에 관심이 있다. 投資者は 株價變動과 配當率에 예민한 관심을 표시하며 投資者에게는 株當利益額(EPS, earnings per share)과 株價收益比率(P/E ratio, price-earnings ratio)이 중요한 投資指標가 된다.

投資者は 株式의 구입에 있어서 무엇을 포기하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고, 株式의 賣却에 있어서는 販賣實受金, 未來의 株價, 未來의 配當金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株式의 保留은 購入·賣却의 保留決定을 의미한다.

投資者は 다른 財務諸表利用者와는 달리 株式이 市場의 評價를 받게 되며 投資市場의 介在로 意思決定過程이 비교적 복잡하다. 또 投資者は 企業의 潛在的 收益力(potential earning power)을 평가하고 株價·配當金政策에 관심을 둔다. 그 企業의 經濟的 展望이 좋다거나 未來에 配當金이 오른다거나 無償株의 配當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投資者は 株式賣却보다는 새로운 株式的 구입에 관심을 둘 것이다. 따라서 投資者は 그 企業이 投資할 만한 對象으로서 價值를 가지고 있는 한 株式投資는 계속되며 企業의 價值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株價는 上昇하게 된다. 그런데 企業에 대한 完全한 知識이 없으면 企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會計情報의 公開가 중요하게 된다.

베이커·하슬렘(Baker and Haslem)의 統計調查에 의하면 投資者が 요구하는 會計情報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⁸⁾ 그들은 投資者들에게 33個項目의 設問을 配布하여 통계조사를 하였는데 投資者에게 중요한 會計情報의 優先順位를 <表-1>에서 와 같이 표시하였다.

(27) Michael N. Chetkovich, "Standards of Disclosure and Their Development," *The Journal of Accountancy*, Dec. 1955, p. 49

(28) H. Kent Baker and John A. Haslem, "Information Needs of Individual Investors," *The Journal of Accountancy*, Nov. 1973, pp. 64-69.

〈表-1〉

| 順位 | 設問内容 |
|-----|--|
| 1位 | 企業의 未來에 대한 經濟的 展望 |
| 2位 | 經營者의 質的 水準 |
| 3位 | 企業이 속한 產業의 未來 經濟的 展望 |
| 4位 | 未來 賣出額의 증가 |
| 5位 | 企業의 財務能力의 上昇 |
| 6位 | 企業의 株當利益額의 成長 |
| 9位 | 株式보유로 인한 貨幣損失危險(risk of losing money on the stock) |
| 20位 | 企業의 未來 配當率 成長 |
| 25位 | 過去의 配當率 成長 |
| 32位 | 企業의 規模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投資者는 그 企業에 대한 未來의 經濟的 展望과 그 企業이 속한 產業의 經濟展望 등 潛在的 收益力의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最近 美國에서 賣出額 및 純利益에 대한豫測情報(forecasts), 豫算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投資者의 企業에 대한 潜在的 收益力を 알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때문에 나온 것이다. 둘째로, 이 통계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經營者의 質的 水準이 投資決定要因으로서 중요하다는 點이다. 이것은 經營者의 個人的 能力・資質이 企業의 成長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중요시되는 配當率・企業規模는 投資決定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株主(stockholders)는 현재의 投資者로서 株式所有比率에 따라 寡占株主(大株主), 小株主, 法律上의 少數株主로 나뉜다. 이들의 利害關係는 각각 다른데, 보통 大株主는 그 기업을 支配할 목적으로 株式을 소유하므로 株價變動이나 配當率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株主로서 残留한다. 그러나 小株主는 株價・配當率의 변동에 따라 유동하는 경우가 많다.

資本과 經營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株主가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株主들에게 會計情報 to 알려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經營成果를 평가할 수 있고, 經營者에 대한 連任, 選任, 解任, 補償에 대한意思決定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株主는 會計情報에 의존하여 기업활동과 경영자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株主를 위한 공개사항으로는 投資者, 債權者の 情報要求가 모두 해당되지만 특히 期中の 株式構成의 變動, 收益力弱化證券(dilutive securities, 例 轉換社債)의 존재로 인한 株當收益力의 弱化(dilution) 여부, 會社의 合併, 讓渡, 議決權의 制限, 發行株式의 종류・주식수, 利益配當의 제한 등이 있다.

(2) 債權者

債權者(creditors)는 投資者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債權者, 未來의 債權者로 나눌 수 있다. 債權者는 기업에 대한 信用供與의 확대, 信用條件와 결정 등 信用決定(credit decision)에 관한 意思決定을 한다. 元金과 利子率에 따른 利子를 期限內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信用決定에 있어서는 危險負擔의 평가가 중요하다. 元金과 利子支給의 不確實性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기업의 財務諸表 등 공개되는 會計情報로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 대한 危險負擔은 投資金額, 利子의 回收도 중요한 것이나 會社의 破產・整理, 政府・產銀의 관리기업체로의 轉落, 債還能力의 감소로 인한 延滯, 빅더미속의 虛弱會社 등 여러 가지 危懼로 인하여 債權者는 借入者에 대하여 制限을 가하고 會計情報を 공개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當該企業이 외국에 所在할 경우에는 외국의 政情이나 環境變化로 資金移動의 制限을 받아 債權回收의 不確實性이 증가한다.

債權者는 會計情報 중에서도 그 企業의 資金흐름(funds flow) 또는 現金흐름(cash flow)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資金運用表(statement of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또는 現金資金運用表(cash flow statement)에 의한 資金의 調達과 運用狀況이 중요하다. 이러한 現金흐름의 파악도 결국 그 企業의 支給能力(solvency)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債權者를 보호하기 위한 公開事項으로는 長期借入金의 內譯, 擔保物의 明示, 利益配當의 支給制限, 次後借入의 抑制, 債權者에게 주어지는 優先權, 退職給與充當金・偶發債務의 존재, 使用이 제한된 現金, 配當金의 滯納, 經營比率의 일정수준維持(특히 流動比率, 負債比率) 등이 있다. 이들 사항은 借入契約・借款契約에서 規定될 뿐만 아니라 財務諸表註譯, 补充明細表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債權者中心의 企業評價를 할 수 있다.

債權者에 따라서는 企業에 대해서 信賴할 수 있는 公認會計士의 監查報告書를 요구함으로써 企業의 報告基準의 確立, 會計監查에까지 관여하는 事例도 있다. 債權者は 經營比率의 일정수준이 유지되지 않거나 支給能力이 나빠질 때에는 追加金融을 중단하거나 債權의 早期回收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債務者遵守事項이 지켜지지 않으면 財務諸表註釋으로 公開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위의 公開事項 중에서 長期借入金의 內譯은 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企業이 借入資本에 대한 依存度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附屬明細書에 기재하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外國에서는 財務諸表註釋으로 元金, 利子, 滿期日, 残存償還金額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投資者와 債權者를 위한 公開事項은 유사한 점이 많아 거의 동일하다. 會計目的研究團의

「財務諸表의 目的」에 의하면⁽²⁹⁾

“投資者·債權者의 情報要求는 本質적으로 동일하다. 두 그룹 모두 그들에게 企業에서 現金흐름을 創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그들은 現金흐름의 金額, 時期를豫測, 比較, 評價하고 未來 現金흐름의 不確實性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3) 財務分析家

財務分析家(financial analyst) 또는 投資分析家(investment analyst)는 證券專門家로서 投資者에 投資勸誘를 하는 위치에 있다. 오늘날 證券市場의 발달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美國의 경우 會計情報의 分析은 대부분 財務分析家가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財務分析家에 속한 것으로는 證券會社·投資公社·證券去來所의 證券實務擔當者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논의되는 證券分析士는 바로 財務分析家를 指稱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投資와 비교하여 該當企業에 대한 投資評價를 하고 投資者에게 助言해주는 역할을 한다.

앤더슨(Anderson)에 의하면 財務分析家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比較(comparability)의 문제라고 하였다.⁽³⁰⁾ 會社間의 比較, 會社와 그 會社가 속한 產業平均과의 比較, 同一會社에 있어서 前期와의 比較는 각각 다른 會社들간에 적용하고 있는 會計原則 또는 會計方法이 다르므로 比較가 어렵다. 그러나 比較의 곤란성은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의하여 작성된 財務諸表와 公開事項의 明示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앤더슨의 論文에서는 이러한 比較問題를 개선하기 위하여 部門別報告, 外國營業活動의 內譯, 對政府契約에 있어서 收益의 實現, 在庫資產投資(backlog information), 利益調整手段(income smoothing device)으로서 廣告費·研究開發費의 金額과 會計處理政策 등을 公開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固定資產의 評價, 長期賃貸借(long-term leases), 退職金, 特別損益의 공개로 財務分析家の 입장에서 比較分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모츠(Mautz)는 美國財務經營者協會(FEI,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의 의뢰에 의한統計調查에서 財務分析家들을 대상으로 調查한 결과 “投資者들은 配當金과 資本評價(capital appreciation)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最大利益率(maximum return)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투자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企業의 成長能力(販賣市場의 擴大, 株當利益額의 증가, 研究開發費의 증가), ② 經營能力(普通株式資本利益率의 上

(29) AICPA Study Group, *op. cit.*, p.20

(30) Corliss D. Anderson, "The Financial Analyst's Needs," Berkeley Symposium on the Foundations of Financial Accounting (Berkele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67) pp.98-109

昇, 任員의 評判), ③ 收益性(總資本利益率, 自己資本利益率, 賣出額利益率의 上昇)을 財務分析家는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³¹⁾

(4) 其他의 財務諸表利用者

여기 記述하는 바와 같이 投資者, 債權者, 財務分析家 이외에도 많은 財務諸表利用者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 利害關係를 갖고 있지 않으며 投資者, 債權者, 財務分析家처럼 共通的인 會計情報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이한 情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會計情報의 公개에 있어서 이들의 情報要求는 2次的으로 고려되는 수가 많다.

政府機關・稅務署・證券去來所・投資公社

政府機關(government agencies)은 國家經濟의 발전과 消費者保護를 목적으로 존재하지만企業에 대해서는 規制機關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들 중에는 經濟企劃院, 財務部, 商工部, 農水產部 등 各部處와 國營企業體 등 산하기관이 있다. 이들은 企業利益의合理的 水準의評價, 販賣價格의 規制, 借款・資本導入의 檢토, 各種許可業務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企業의 財務情報を 필요로 한다.

稅務署(taxing authorities)의 경우 企業의 會計情報은 法人稅申告, 稅額의 決定, 罰金의賦課, 稅務監查에 有用한 자료가 되고 있다. 證券去來所는 上場의 接受, 去來의 取消, 會計實務의 變更要求, 附加的 公開表示의 勸告 등을 할 수 있다. 證券去來所에서는 최근 不適正・無意見의 監查意見을 받은 上場會社에 대해서 特別포스트種目으로 指定하여 投資者的 주의를 환기시키고 有償增資, 信用供與의 抑制 등 直接的 制裁를 가하고 있다.

投資公社는 企業公開에 있어서 株式의 發行價格을 결정할 때 그 기업의 資產價值와 收益價值를 중심으로 계산한다. 이들 價值는 會計情報의 기초로 하되 그 기업의 미래의 經濟的展望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된다.

經營者, 從業員, 勞動團體

기업의 主要目標는 所有主에게 돌아갈 利益의 極大化이므로 이 目標를 향한 企業成長에 대해서 經營者는 責任이 있다. 經營者는 企業收益力を 평가하기 위하여 經營成果를 예측, 평가하여야 하며, 金融의 필요성, 過去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대한 評價, 配當政策의 결정, 未來의 財務計劃을 세우기 위하여 會計情報의 필요로 한다.

從業員, 勞動組合은 賃金水準의 결정, 雇傭條件, 賃金協商에 있어서 企業의 會計情報가 중요하다. 특히 그 企業과 企業이 속한 產業의 經濟的 展望은 중요하다. 例를 들면 企業에

(31) Robert K. Mautz, *Financial Reporting by Diversified Companies*, (New York: Financial Executives Research Foundation, Inc.), p.7

서 많은 利益을 올리고 있으나 다른 企業보다 낮은 賃金水準이라면 從業員들은 賃金引上을 요구할 것이다. 從業員에게는 會社의 社員이 아니나 家族이 있으며 이들도 企業利害關係者의 범위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

顧客, 消費大衆, 供給業者

顧客(customers)과 消費大衆(consumers)은 企業의 製品을 구입하는 사람들로서 價格이 비싸거나 相對的 負擔이 크면 곤란하다. 특히 消費者들이 부당하게 비싼 價格으로 상품을 구입한다면 企業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利益을 畢積할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은 附加價值生產性의 向上에 의한 正當한 努力의 代價만을 요구하여야 된다. 顧客과 消費大衆이 犠牲되지 않도록 政府機關에서는 企業의 會計情報 to 분석하여 告示價格을 지정하기도 한다. 최근 政府에서 공포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서는 消費者保護를 목적으로 最高價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最高價格의 산출근거는 獨寡占企業의 會計資料인 原價를 기초로 하게 된다.

供給業者·納品業者(suppliers)는 企業의 會計情報에 의하여 企業活動에 대한 關與度의 예측, 價格變動의 예상, 供給擴大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經濟團體, 言論機關, 學界, 研究機關

현재 經濟團體로서는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貿易協會, 大韓商工會議所 등 壓力團體 성격의 주요기관뿐만 아니라 鐵鋼協會, 建設協會 등 產業別 團體도 있다. 이들은 產業統計의 蒐集, 比較, 分析, 評價를 하며, 政府機關에 대한 建議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會計情報 to 이용할 수 있다.

言論機關에서는 輸出動向, 物價 등 國民經濟의인 것뿐만 아니라 株價, 기업의 賣出額, 純利益의 伸張 등 會計情報 to 보도하며, 經營陣의 改編, 脫稅사실, 外貨逃避, 社會的 責任을 다하지 못한 行爲 등 會計情報 이외의 사실도 널리 알린다. 言論機關의 보도는 潛在的 投資者·債權者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公信力도 좌우하게 된다. 특히 株當利益額(earnings per share)과 株價收益比率(price earnings ratio)의 발표는 投資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株價指標가 會計情報로서 중요시되리라고 展望된다.

學界·研究機關은 經營學·會計學에 대한 理論的研究, 統計資料의 活用, 企業實務의 개선을 위한 實踐的研究를 하는데 있어서 會計情報 to 이용한다. 이들 연구담당자에게 會計情報은 學問的 발달을 위한 중요한 情報源泉이 되고 있다.

3. 公開量의 決定

會計情報의 公開量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二律背反의 要請이 있다. 즉 會計情報은 가급적 많이 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적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會計情報가 많

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經濟狀況이 복잡해지고 財務諸表利用者의 情報要求가 多角的으로 변모함으로써 財務諸表利用者는 좀더 많은 會計情報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각 기업에서 발표하는 財務諸表와 기타의 會計情報은 財務諸表利用者가 消化할 수 없을 만큼 많은 會計情報가 공표되고 있다. 會計情報가 많이 공개될수록 좋다는 경향은 會計情報의 洪水時代를 가져 왔다.

會計情報률 가급적 적게 표시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장되고 있다. 공개사항을 많이 표시하면 財務諸表利用者는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놓치게 되며, 會計情報を 상세하게 늘어놓는 것은 중요성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된다. 기업측의 입장에서도 會計情報의 공개는 競爭企業에 會社機密을 누설하게 되므로 꺼리게 된다. 會社에서는 會計情報의 공개에 대한 財務諸表利用者의 압력에 굴복하여 공개를 동의하더라도 法律·會計規程에 정해진 最少限度만을 공개하고자 할 것이다.

會計情報률 많이 또는 적게 공개하자는 이 두 가지 要請 사이에는 適正公開(adequate disclosure)라는 문제가 있으며 會計情報의 공개량은 기업측과 財務諸表利用者要求의 중간 지점인 어느 適正線에서 결정될 것이다.

會計情報의 公開量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것은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誤導되지 않도록” (not misleading)이란 會計情報의 公開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會計情報의 洪水時代에 있어서는 중요항목을 하일라이트하고 수많은 자료를 簡明하게 요약하여 財務諸表利用者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項目的 중요성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된다. 로스(Ross)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會計情報量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였다.⁽³²⁾ 그는 會計情報은 量的으로 감소되어야 하며 質的으로는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몇몇 行動科學的研究(behavioral studies)에 의하면 많은 會計情報가 공개되어도 좋다는 것을 數理的으로 증명하고 있다.⁽³³⁾

公開事項은 財務諸表利用者의 要求, 時代의 要請, 그 기업의 特殊事情, 公開事項選定者の 專門的 識見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공개사항을 규정하는 公開事項의 標準的 內容, 標準的 公開量을 劃一的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업간에 있어서 會計情報의 比較(comparison)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標準化(standardization)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會計情報의 公開量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다음에 考察하고자 하는 公개범위의

(32) Howard Ross, *The Elusive Art of Account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66)

(33) 例를 들면 Linda Dudycha and J.C. Naylor,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Inference Process in Complex Choice Behavior Situ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Sep. 1966, pp.110-28

擴大, 公開事項의 選擇이라는 量的・質的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다루기로 한다.

III. 公開範圍의 擴大와 그 原因에 관한 考察

1. 傳統會計에 대한 批判에서 출발

會計情報公開範圍의 확대가 요구되는 근본적 이유는 傳統會計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傳統會計의 기본적 후레임은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는 편리한 法則을 만들어 내어 會計擔當者로 하여금 이 틀안에서 會計處理하고 純利益을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傳統會計의 법칙은 원래 自然法則처럼 公理가 되거나 證明可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脆弱點을 지니고 있다.

會計情報의 공개라는 관점에서 傳統會計는 다음과 같이 비판된다.

첫째로, 傳統會計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會計政策(accounting policies)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에서는 어떤 會計政策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서 쉽게 利益操作(income manipulation)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在庫資產의 價格決定에 있어서 後入先出法 보다는 先入先出法을, 減價償却의 初期에 있어서 定率法 보다는 定額法을 選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賣出에 의한 正常의 영업활동으로 利益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순히 어떤 會計政策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쉽게 利益操作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종래의 傳統會計에서는 測定困難을 이유로 많은 會計情報의 공개를 회피해 왔다.

예를 들면, 人的資源情報(human resource information)는 기업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經濟的 資源인 줄 알면서도 財務諸表에 표시하지 않았다. 기업에 있어서 商品 機械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업경영활동의 主役이 되어 온 人的資產(human assets)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會計處理도 하지 않았다.

셋째로, 傳統會計에 의해 작성되는 財務諸表는 과거의 업적만을 표시할 뿐이지 未來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기업에 대한 評價는 기업의 潛在的 收益力(potential earnings)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데 過去의 會計情報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절반의 真實만을 표시할 뿐이지 未來에 대한 절반의 真實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넷째로, 傳統會計에서는 原價主義(cost principle)를 신봉한다. 歷史原價(historical costs)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財務諸表는 現在價值(current value)를 나타내지 못하고 交換去來(exchange transaction)에 의해 결정된 過去의 原價만을 표시할 뿐이다. 그러므로 貨幣單位의 購買力變動을 표시해 주는 物價變動으로 인한 영향을 財務諸表에 公式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2. 會計情報公開의 새로운 토픽들⁽³⁴⁾

傳統會計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會計情報의 공개문제를 해결하는 方案으로서 會計報告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會計情報의 公開範圍를 質的, 量的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기업이 택한 會計政策을 財務諸表의 註釋, 監查報告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앞서의 예를 들면 財務諸表利用者가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會計情報의 공개로 定額法과 定率法 중 어느 方法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財務諸表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會計情報의 공개는 단순히 기업의 會計政策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財務諸表利用者の 요구가 多樣해졌을 뿐만 아니라 急變하는 經營環境의 변화로 情報의 洪水時代가 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개토픽들이 등장한 것이다.

첫째로, 기업의 社會的 責任에 관련된 社會意識支出(social awareness expenditures)인 公害抑制支出, 慈善・教育・醫療機關에 대한 寄附 등 社會發展을 위한 지출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서 현재의 社會的 問題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社會的 壓力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업의 人的資源(human resources)을 財務諸表에 표시하자는 것이다. 人的資源會計(human resource accounting)의 도입은 人的資源을 貨幣價值로 측정한다는 중요한 사실 뿐만 아니라 人的資產을 기업의 價值創造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經營者는 현재의 經營意思決定에 人的資源이라는 중요한 變數를 고려하여 意思決定을 하게 된다. 따라서 意思決定의 幅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豫測情報(forecasts)는 보통 次期에 예상되는 賣出額, 賣出總利益, 當期純利益 등 要約된 會計情報률 공개하고 이를 금액을 예측하는데 이용된 假定(assumptions)을 공개하는 것이다. 기업의 事業計劃, 豫算과 같이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는 수도 있다.

(34) 會計情報公開의 새로운 토픽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經營實務」前揭書를 참고할 것.

넷째로, 一般物價水準變動(general price level changes)에 의한 財務諸表의 작성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財務諸表에 표시하자는 것이다. 物價變動에 의한 財務諸表는 物價指數(price index)와 代置原價(replacement cost)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다섯째, 部門別報告(segment reporting)로 系列別, 事業別, 製品別로 財務諸表를 작성하거나 賣出額, 純利益 등 요약된 會計情報률 공개하는 것이다.

여섯째, 中間報告書(interim reports)를 3개월마다 작성하여 기업 발전에 대한 時機適切한 情報를 財務諸表利用者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最新資料에 의한 收益性의 판단, 과거 同期間과의 比較 등 有用한 資料가 된다.

傳統會計의 批判에서 출발한 위의 여러 토픽들은 美國, 英國, 加拿다, 濟洲, 和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制度化되려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制度는 傳統會計의 후례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補完하는 방향에서 조정되고 있다.

이제 財務諸表利用者를 위한 會計情報의 공개는 어디까지 擴大될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업의 모든 것을 공개하자는 現代의 공개무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3. 公開의 最大範圍

公開事項으로서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重要한 會計政策(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② 債權者請求權(creditor claims), ③ 株主請求權(claims of equityholders), ④ 偶發資產과 偶發負債(contingent assets and liabilities), ⑤ 未確定契約(executory contracts), ⑥ 財務諸表作成日 以後 發生한 事項(subsequent events)이 있다.⁽³⁵⁾

그러나 會計情報의 공개범위는 점차적으로 擴大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의 모든 것을 표시해야 한다는 完全公開(full disclosure)의 原則이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이 되고 있다. 公開範圍는 擴大되고 있으며 財務諸表利用者는 좀더 많은 情報를 요구하고 있다.

會計情報公開의 最大限度 또는 最少限度(maximum or minimum requirement)는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 會計情報의 공개요구가 어디까지 擴大될지 豫測할 수 없다. 會計情報의 公開範圍는 결국 財務諸表利用者の 요구, 競爭企業에 미치는 영향, 經營環境의 변화, 規制機關의 公開要求, 會計監查人の 壓力, 經營者の 哲學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會計情報에 따라서는 倫理的 基準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會社의 私債(private loan)는 巨額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우 중요한 項目임에도 흔히 公개되지 않는 것이다.

(35) 公開事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經營實務」前揭書를 참고할 것.

會計情報의 공개는 지금까지 一般目的의 財務情報(general-purpose 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하여 광범위한 財務諸表利用者層의 共通的인 慾求(common needs)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이 두어져 왔다. 그러나 財務諸表利用者는 각각 자기들이 알고자 하는 會計情報가 좀 더 자세히 공개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多目的 財務報告書(multiple-purpose reports)와 單一目的 財務報告書(mono-purpose reports)이다. 매티쉬(Mattessich)에 의하면 여러 개의 單一目的 財務報告書가 多目的 財務報告書를 작성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³⁶⁾

앞서 기술한 重要한 會計政策 등 여섯 가지 公開事項 이외에도 傳統會計의 批判에서 출발하여 새로이 나타난 會計情報의 토픽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公開事項들은 과거에는 공개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으로 브루멧·후램홀츠·파일(Brummet, Flamholz, and Pyle)⁽³⁷⁾은 人的資源(human resources)을, 베언베그·도푸치(Birnberg and Dopuch)⁽³⁸⁾는豫測情報, 라파포트·러너(Rappaport and Lerner)⁽³⁹⁾는 部門別報告, 파커(Parker)⁽⁴⁰⁾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環境破壞(ecological impact)에 관한 外部費用(external costs)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目的研究團에서는 現在價值(current value)와 歷史原價(historical cost)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現在價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다.⁽⁴¹⁾ 이미 네델란드와 브라질에서는 時價表示財務諸表를 작성하고 있고, 英國과 美國에서도 時價表示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공개될 수 있는 會計情報의 종류는 많다. 싸이몬스·캐런브록(Simons and Karrenbrock)은 財務諸表註釋으로 22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⁴²⁾

〈表-2〉는 筆者가 財務諸表註釋을 중심으로 會計情報로서 공개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網羅해 본 것이다. 〈表-2〉에 의하면 39個項目이지만 細分한 것까지 합하면 會計情報로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80個에 이른다. 사실상 1개기업에서 이들 항목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36) Richard Mattessich, *Accounting and Analytical Methods*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64)

(37) R. Lee Brummet, Eric G. Flamholz and William C. Pyle, "Human Resource Measurement-A Challenge for Accountant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8, pp.217-24

(38) Jacob G. Birnberg and Nicholas Dopuch,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Framework for Disclosure," *The Journal of Accountancy* Feb.1963, p.56-62

(39) Alfred Rappaport and Eugene Lerner, *A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Diversified Companies*, (New York: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1969)

(40) James E. Parker, "Accounting and Ecology: A Perspective," *The Journal of Accountancy* Oct. 1971, pp.41-46

(41) AICPA Study Group, *op. cit.*, p.36

(42) Harry Simons and Wilbert E. Karrenbrock, *Intermediate Accounting: Comprehensive Volume 4th ed.* (Cincinnati, Ohio: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64)

아니고 目的適合性이라든가 重要性의 기준에 의하여 公開事項으로서 適格여부를 판단하므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財務諸表註釋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드물다.

〈表-2〉 財務諸表 註釋事項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1) 중요한 會計政策

- ① 聯結의 기초
- ② 在庫資產의 價格決定・評價方法
- ③ 固定資產의 減價償却方法・評價方法
- ④ 無形固定資產・移延資產의 傷却方法
- ⑤ 收益의 認識方法(長期工事契約)
- ⑥ 研究開發費의 처리
- ⑦ 外國通貨의 換算方法 및 처리

(2) 債權者請求權

- ① 長期借入金內譯
- ② 擔保設定
- ③ 支給保證
- ④ 社債發行
- ⑤ 經營比率의 유지

(3) 株주의 請求權

- ① 株式의 구성
- ② 新株發行
- ③ 株式增減變動
- ④ 配當政策
- ⑤ 利益配當의 制限

(4) 偶發資產과 偶發負債

- ① 贈與・寄附・補助金・債與金으로 받게 될 금액
- ② 세금심사청구로 받게 될 還給金
- ③ 訴訟의 勝利로 받게 될 금액
- ④ 支給保證 어음背書로 발생 할 債務
- ⑤ 稅務署와의 紛爭으로 인한 追加法人稅
- ⑥ 訴訟事件의 敗訴로 인한 追加的 부담

(5) 未確定契約(executory contracts)

- ① 購入契約(purchase commitment)
- ② 賃貸借契約(lease agreement)
- ③ 退職金 및 年金 約定(pension agreement)

(6) 財務諸表作成日 以後 발생한 사항

- ① 株式・社債의 發行
- ② 災害
- ③ 合併
- ④ 購入契約(固定資產 在庫資產)
- ⑤ 龍業
- ⑥ 平價切下
- ⑦ 巨額의 長期借入金 發生
- ⑧ 訴訟事件

(7) 部門別 財務報告

- (8)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련된 支出
- (9) 豫測情報
- (10) 中間會計報告書
- (11) 時價表示財務諸表
- (12) 人的資源(human resources)
- (13) 株當利益額
- (14) 使用이 제한된 現金, 預金
- (15) 退職給與充當金
- (16) 收益力弱化 證券(轉換社債, 轉換株式, 償還株式)
- (17) 固定資產의 特別償却
- (18) 資本의支出과 收益의支出의 區分基準
- (19) 稅法上 인정되는 海外市場開拓준비금, 輸出損失준비금, 海外投資損失金
- (20) 法人稅에 관한 사항
- (21) 로얄티의 계산근거와 금액
- (22) 外國으로 부터의 技術導入契約 資本導入契約
- (23) 會社의 合併
- (24) 平價切下로 인한 영향
- (25) 關係會社, 從屬會社의 범위
- (26) 法人稅의 配分
- (27) 自己株式의 취득경위와 회계처리
- (28) 資產再評價
- (29) 割賦賣出
- (30) 租稅減免規制法, 外資導入法, 企業公開促進法 등 稅法上의 特惠사항
- (31) 創業費・開業費
- (32) 經營比率
- (33) 會計變更(accounting changes)
 - ① 會計原則의 변경
 - ② 會計推定의 변경
 - ③ 報告企業의 변경
- (34) 投資資產의 評價方法
- (35) 外國營業活動
- (36) 假受金, 假支給金의 互額계상
- (37) 繼續性의 원칙에 어긋난 사항
- (38) 歷史原價와 다를 경우 現在價值(current value)
- (39) 現金흐름(cash flow), 資金흐름(fund flow)

IV. 公開事項의 選擇

1. 公開事項의 選擇基準

헨드릭슨(Hendriksen)은 公開事項의 選擇基準(criteria for selection)으로서 目的適合性과 重要性을 들고 있다.⁽⁴³⁾ 그러나 이러한 基準 이외에도 理解可能性, 檢證可能性, 比較可能

(43) Eldon S. Hendriksen, *op. cit.*, pp.562-564

性, 量的表現可能性, 中立性, 簡潔性, 適時性, 實用性, 信賴性 등 會計情報基準 또는 會計情報의 屬性에 관한 것이 있어서 公開事項의 選定基準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들 會計情報基準은 <表-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美國公認會計士會의 APB Statement No. 4,⁽⁴⁴⁾ 會計目的研究團의 「財務諸表의 目的」⁽⁴⁵⁾, 美國會計學會의 ASOBAT,⁽⁴⁶⁾ 스나밸리(Snavely)⁽⁴⁷⁾의 論文에서 각각 다르게 열거되고 있다.

이들 諸基準 중에서 公開表示와 관련하여 目的適合性과 重要性이 가장 중요한 基準이다. 버즈비(Buzby)는 目的適合性을 主要情報의 屬性(primary attribute of information)이라고 하였고 그 이외의 基準은 目的適合性에 대한 制約事項(constraints)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⁴⁸⁾

<表-3> 會計情報基準의 比較

| | ASOBAT | Snavely | APB Statement No. 4 |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
|--------|--|--|--|--|
| 名稱 | Accounting Standards | Accounting Information Criteria | Qualitative Objectives of Financial Accounting and Financial Statements |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Reporting |
| 會計情報基準 | ① relevance ② verifiability ③ freedom from bias ④ quantifiability | ① relevance ② reliability ③ understandability ④ significance ⑤ sufficiency ⑥ practicality | ① relevance ② understandability ③ verifiability ④ neutrality ⑤ timeliness ⑥ comparability ⑦ completeness | ① relevance & materiality ② form and substance ③ reliability ④ freedom from bias ⑤ comparability ⑥ consistency ⑦ understandability |

(1) 目的適合性

目的適合性(relevance)은 未來豫測이나 意思決定에 있어서 財務諸表利用者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目的適合한 (relevant) 것으로 보아 모두 公開하여야 한다는 것을 暗示한다. 即目的適合性은 情報가 活用되고 意圖된 行動 또는 얻으려고 기대한 결과와 관련을 갖고 있든가 또는 그것과 有效하게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要請이다. 이 目的適合性은 會計情報利用者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目的適合性은 美國會計學會의 ASOBAT⁽⁴⁹⁾나 美國公認會計士會의 APB Statement No.

(44) APB Statement No. 4, *op. cit.*, par.85-105

(45) AICPA Study Group, *op. cit.*, p.57

(46)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op. cit.*, pp.8-13

(47) Howard J. Snavely, "Accounting Information Criteria,"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7

(48) Stephen L. Buzby, *op. cit.*, p.43

(49)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op. cit.*, p.7

4⁽⁵⁰⁾에서 會計情報基準 中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目的適合性은 財務諸表의 個別利用者가 필요로 하는 경보인가를 확인하여 그들의 意思決定에 有用한 情報를 선정하는 基準이다. 例를 들면 投資者가 長期投資目的으로 株式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配當金이 중요하며 그는 未來配當金에 대한 豫測이 필요하다. 이때에 過去의 配當金支給實績, 賣出額趨勢, 配當金의 支給制限事項은 投資者的 未來配當金의 豫測에 도움을 주는 目的適合한 情報가 된다.

특히 目的適合性은 非計量情報(nonquantitative data)에 있어서 公開事項을 選定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意思決定에 중요한 情報는 目的適合한 情報라고 할 수 있으며 意思決定에 더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情報는 적게 차지하는 情報보다는 더 目的適合한 (more relevant) 것이다.

슈웨이더(Shwayder)는 目的適合性을 屬性概念(property)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財務諸表利用者가 意思決定에 이용하는 사항이라면 目的適合한 것이라고 하였다.⁽⁵¹⁾

例를 들면 純利益은 會計情報의 屬性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企業의 유리창數는 屬性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目的適合한 情報가 아닌 것이다.

(2) 重要性

重要性(materiality)은 會計情報基準의 基本的인 것은 되지 못하나 公開事項의 선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美國會計學會의 「1959年 改正版報告書」⁽⁵²⁾와 美國公認會計士會의 「財務諸表의 目的」⁽⁵³⁾에 의하면 財務諸表利用者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주는 會計情報라면 중요하다고(material) 보았다. 또 이를 報告書에서는 重要性이 相對的인 概念(a state of relative importance)으로서 크기(size)와 本質(nature)의 兩側面이 있다고 하였다. 重要性에는 金額・數量의 크기를 나타내는 量的重要性과 項目的性格을 나타내는 質的重要性으로 나눌 수 있다. 重要性的判定은 相對的이기 때문에 個人的 判斷(judgment)이 중요한 要素가 된다.

目的適合性과 重要性은 會計情報의 公開에 있어서 類似한 意味를 갖고 있으면서도 補完의이다. 目的適合性은 財務報告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各項目의 本質에 관한 것이고 重要性은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항목이 의미하는 程度(significance)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目的適合性은 主로 非量的情報(質的情報 nonquantitative data)에 적용되고 重要性은 量的情報(quantitative data)에 적용된다.

(50) APB Statement No. 4, *op. cit.*, par.87

(51) Keith Shwayder, "Relevance," *Th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68, pp.86-87

(52) 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op. cit.*, p.8

(53) AICPA Study Group, *op. cit.*, p.57

핸드릭슨(Hendriksen)에 의하면 重要性에 의한 公開事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⁵⁴⁾

- ① 量的 資料(當期純利益·資產評價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② 財務諸表에 기재된 量的 資料의 總計 또는 項目別區分
- ③ 財務諸表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推定할 수 없는 量的 資料
- ④ 글로 표현하여야 할 質的情報
- ⑤ 個人·集團의 會社에 대한 特殊관계
- ⑥ 經營者의 계획·예측

會計情報의 公開表示에 있어서 重要性을 量的 情報에 적용하는 데에는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韓國公認會計士會 발표의 監查報告準則에 의하면 「事例：19 重要性基準」에서 監查人이 監查意見上의 重要性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該當事項이 賣出總利益의 2%내지 3%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또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에서는 資產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frac{20}{100}$, 營業外收益總額의 $\frac{20}{100}$ 등으로 표시하여 數量概念에 의한 重要性判斷基準을 규정하였다. 美國에 있어서는 重要性判斷에 관한 量的基準으로서는 보통 純利益의 5% 資產의 10%가 美國公認會計士會의 APB Opinions, 美國證券去來委員會의 Regulation, S-X에 規定되어 있다. 重要性에 관해서는 現在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별도로 報告書를 발표하기 위하여 작업중에 있으며 이미 FASB討論 예모(FASB Discussion Memorandum)가 1975年 3月 出刊된 바 있다.⁽⁵⁵⁾

2. 公開事項의 選擇責任

公認會計士는 企業의 會計情報 중에서 目的適合하고 重要한 事項은 公開表示하도록 勸告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位置에 있다. 액센슨(Axelson)은 “會計情報의 公開責任은 주로 經營者와 會計監查人에게 있다. 經營者は 投資者的 情報要求를 充足시키는데 있어서 主導的 역할을 하며 監查人은 主觀에 의하여 情報를 檢證한다”고 하였다.⁽⁵⁶⁾ 그리므로 經營者와 監查人은 公開事項의 選定에 있어서 서로 協力하게 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會計監查人은 外部人으로서는 企業事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位置에 있다. 그의 리더쉽에 따라서는 會計情報의 公開基準을 설정할 수 있고 追加의 公開事項을 권고할 수 있다. 會計監查人이 公開事項으로서 經營者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主觀的 判斷下에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만약 그가 마땅히 公開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會計情報가 經營者の 拒否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 事實을 監查報告書에 기재하고 때에 따라서는 限定意見

(54) Eldon S. Hendriksen, *op. cit.*, p.107

(55) FASB, FASB Discussion Memorandum, “Criteria for Determining Materiality” (Stanford, Conn.: FASB, March 1975)

(56) Kenneth S. Axelson, “A Businessman’s Views on Disclosure,” *The Journal of Accountancy*, July 1975, pp.42-46

(qualified opinion)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適正公開의 概念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韓國公認會計士會 및 美國公認會計士會의 職業倫理規程(Code of Professional Ethics)에 의하면 會計監查人の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表示에 있어서 重要事項을 漏落하거나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의 중요부분에 위반하였거나 생략하는 경우 이를 公開表示하지 않으면 職業上 背信行爲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⁵⁷⁾

公認會計士의 會計情報의 公開에 대한 責任範圍에 관해서 글라임(Gleim)은 公認會計士는 檢證機能(attest function)을 非企業的・計劃資料에까지 범위를 넓혀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⁵⁸⁾ 그 이유로서 未來의 會計變數에 관해서 거의 알려진 바 없고 客觀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그의 主張은 이미 낡은 것이 되고 있으며 會計監查人の 使命은豫測情報, 物價水準變動情報, 社會的 責任에 관한 情報, 部門別報告에 대해서도 檢證의 責任이 있는 것이다. 美國會計學會에서는 “監查人은 社會經濟的 資料(Socioeconomic data)의 범위까지도 檢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⁵⁹⁾

豫測情報(forecasts)의 公開로豫測이 상당히 빛나갔을 경우에豫測情報의 신뢰하여 투자한 투자자는 잘못意思決定을 한 결과가 된다. 美國에서는 1966年 몬산토化學會社(Monsanto Chemical Corporation)에 있어서 賣出額, 利益의豫測이 실제와 상당히 다르므로서 告訴되었었는데 無罪判決이 있었다.⁽⁶⁰⁾ 判決理由는豫測은豫測資格이 있는 사람(qualified people)即公認會計士와 같은 사람의 善意에 의한 最善의 推定(best estimate)에 의한 것으로豫測情報가 맞지 않았더라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公認會計士의 公開事項에 대한 檢證責任,豫想이 맞지 않는 경우의 責任限界를 類推할 수 있다.

會計監查人の 會計情報의 公開責任에 관련하여 그의 獨立性(independence)이 문제된다. 會計監查人은 不羈獨立性을 標榜하고 있으나 實際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會計監查人은 形式的으로는 株主總會 또는 上場監查班에 의해 人爲的으로 選定되나 經營者와 가정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會計監查料의 決定은 經營者와 監查人간에 결정되며 會計監查는 경영자의 협조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會計監查人은 會計規定上 공개해야 할 會計情報を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會

(57) *Code of Professional Ethics, op. cit., p.31*

(58) Irvin N. Gleim, "Standards of Disclosure for Supplementary Data", *The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1973, pp.50-57

(59) AAA Committee on Non-Financial Measures of Effectiveness, "Report of the Committee on Non-Financial Measures of Effectiveness," *The Accounting Research*, Jan. 1971, pp.47-49

(60)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4), p.1080

會計監查人은 모두同一한 專門的 知識이나 資質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同一한 사실에 대해서 主觀的 判斷에 따라 다른 견해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公認會計士의 主觀的 判斷과 良心에 따라 會計情報의 公開事項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公認會計士의 獨立性, 主觀的 見解, 資質의 相異로 인하여 公開事項은 가급적 많이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會計監查人은 萬能人이 아니므로 誤謬를 범하거나 중요사항을 看過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公開事項의 구체적 열거, 監查報告書의 限定事項의 규정 등에 의하여 會計情報의 公開범위를 확대함이 필요하다.

公認會計士가 監查한 財務諸表나 監查報告書의 適正성을 누가 證明(certify)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韓國公認會計士會內에 監理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公認會計士의 監查終了가 會計情報에 대한 最終的인 檢證이 되고 있으며 公認會計士의 會計情報의 公開에 대한 責任은 더이상挑戰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公認會計士가 會計情報의 公開에 관하여 대만하거나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업무를遂行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制裁가 필요할 수도 있다. 會計監查인이 會計情報의 公開에 있어서 그의 任務를怠慢하거나 違反하면 스파첵(Spacek)이 말하는 會計審判所(accounting court)에서 監查인의 會計情報의 公開責任에 대한 判定을 내릴 수도 있다.⁽⁶¹⁾

V. 會計情報의 公開實態에 대한 分析과 評價

1. 會計情報의 公開歷史와 實態

우리나라에 있어서 社會的으로 會計情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2年 이후라고 생각된다. 8·3措置로 알려진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企業公開促進法」,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證券去來法」이 모두 1972年 制定되거나 改正되었다. 그후政府의 적극적 施策에 힘입어 投資大眾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종래에는 企業主만이 관심을 가졌고 外部에 公表를 꺼려했던 기업의 會計資料가 社會的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원래 기업의 會計資料는 기업의 收益力(earning power)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證券市場의 발달이 一淺하고 證券에 관한 일 반대중의 이해가 부

(61) Leonard Spacek, "The Need for an Accounting Court", *Arthur Andersen Chronicle*, April 1958

즉하므로서 기업의 會計資料에 의한 投資決定—買入·賣却·保留—을 하지 않고 資產再評價로 인한 無償株期待 등 短期的 株價變動要因에 의해 株式을 매입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對象企業이 대부분 공개되고 證券市場이 安定勢를 견지하면 株價變動의 기초가 되는 會計情報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證券市場의 전진한 발달·質的 발달은 長期投資者의 확보에 있으며, 長期投資者는 기업의 會計資料를 기초로 그 기업의 收益性을 판정하는 意思決定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會計情報의 公開實態는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商法 第 449條에 의거 決算後 新聞紙上에 貸借對照表를 公示하는 것이 고작이다. 改正된 證券去來法 第 126條에 의하면 上場法人은 貸借對照表를 公告할 때에 公認會計士의 名義 및 監查意見을 간단하게 附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貸借對照表만의 公示는 損益計算書 즉 企業의 販賣成績, 純利益의 測定에 財務諸表의 중점이 옮겨진 現代會計에 있어서는 財務諸表利用者의 관심을 벗어난 會計資料만을 공개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작금 우리나라에서도 會計報告制度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措置를 취하고 있다. 「證券去來法」에 따라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는 資金運用表, 聯結財務諸表를 새로운 財務諸表樣式으로 추가하였으며 財務諸表註釋을 보완하여 많은 公開事項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많은 會計情報を 기업외부에 알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會計情報公開의 중요성이 비교적 덜 되어 있으나 美國, 英國, 加拿다, 漢洲 등에서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統計調查에 의하면 美國의 公認會計士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가 會計情報의 公開問題라고 하였다.

美國에 있어서 公開表示에 관한 최초의 會計規定은 美國公認會計士會에서 1938年 발표한 「以前의 意見書」(Prior Opinions)에 규정된 것으로 自己株式을 資產으로 계상한 때의 配當金에 관한 것이다.⁽⁶²⁾ 企業의 財務報告에 관한 最初의 研究는 로퍼(Roper)의 統計調查에 관한 論文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그러나 公開問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公開事項을 會計公準(postulate)의 하나로 인정한 무닛츠(Moonitz)의 ARS No.1 以後이었다. 그후 발표된 美國公認會計士會 APB Opinions, Statements의 발표에 있어서는 각 事項에 대한 會計處理方法을 규정하면서

(62) AICPA, *Accounting Research and Terminology Bulletins, Final Edition* (New York, AICPA, 1961), p.12

(63) Elmo Roper, *A Report on What Information People want About Policies and Financial Conditions of Corporations*, Vol. 1, (The Controllership Foundation, Inc., 1948) pp.iii-xxvii

公開事項도 附加하여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公開要求는 1967年 발표된 APB Opinion No. 12에 비로소 나타났다.⁽⁶⁴⁾ 그러므로 公開問題가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은 美國에서도 극히 最近이라고 볼 수 있다.

公開問題가 중요한 報告問題로 클로즈업되기 시작한 것은 重要한 會計政策(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의 公開를 요구한 1972年 4月 발표된 美國公認會計士會 APB Opinion No. 22가 나온 後부터이다. 여기서는 重要한 會計政策의 要約을 財務諸表 맨처음註釋(initial note)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⁶⁵⁾ 또 이 意見書에서는 會計政策에 관한 財務情報은 財務諸表利用者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必須의이라고 그 重要性을 明示하였다.

美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每年 「會計趨勢・技術調查報告書」(Accounting Trends and Techniques)를 600個企業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會計政策을 公開한企業의 數는 <表-3>에서 보는 바와 같다.⁽⁶⁶⁾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會計政策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意見書가 발표된 1972年 이후 1974年에 會計政策을 공개하는 會社의 數가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表-3>에서 보면 600個기업의 대부분이 減價償却方法, 聯結의 기초, 法人稅配分, 在庫資產價格決定 등에 관한 會計政策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表-3> 會計政策을 公開하는 企業의 數(美國)

| | 1974 | 1972 |
|--------------------------|------------|------------|
| 減價償却方法 | 582 | 482 |
| 聯結의 基礎 | 576 | 486 |
| 法人稅配分 | 558 | 458 |
| 在庫資產 價格決定方法 | 556 | 426 |
| 研究開發費 | 408 | 304 |
| 固定資產 | 510 | 314 |
| 外國通貨의 換算 | 378 | 323 |
| 從業員福祉費 | 312 | 281 |
| 無形固定資產의 債却 | 168 | 259 |
| 株當利益額 | 174 | 182 |
| 收益의 認識 | 未調査 | 121 |
| 重要한 會計政策의 要約을 표시하는 會社의 數 | 595 | 503 |
| 표시하지 않는 會社의 數 | <u>5</u> | <u>97</u> |
| | <u>600</u> | <u>600</u> |

現在 美國에서는 會計情報의 公개에 있어서 會計政策뿐만 아니라 部門別報告,豫測情報, 物價水準變動情報, 社會的 責任에 관한 社會意識支出, 人的資源에 관한 情報를 公개하는

(64) AICPA, *APB Opinion No. 12*, "Omnibus Opinion-1967" (New York: AICPA, 1967) par. 4 and 5

(65) AICPA, *APB Opinion No. 22*,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New York: AICPA, 1972)

(66) AICPA,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1975*, 29th ed. (New York: AICPA, 1975), p.23

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사실이다.

部門別報告(business line reporting)는 미국의 경우 證券去來委員會에서 該當部門의 賣出額이 全體部門의 총매출액의 15%이상, 該當部門의 經常利益(特別項目・法人稅控除前 純利益)이 全體部門의 經常利益의 총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部門別로 賣出額, 純利益 등 會計情報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趨勢・技術調查報告書」에 의하면 調查對象의 600개기업 중에서 1974년에 75%인 449개기업이 部門別情報률 공개하였음을 <表-4>에서 알 수 있다.⁽⁶⁷⁾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971年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1974년에 部門別情報률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賣出額과 純利益을 함께 공개하는 기업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4> 部門別 會計情報률 공개 하는 기업의 數(美國)

| | 賣出額 | | 純利益(經常利益) | |
|----------------|------|------|-----------|------|
| | 1974 | 1971 | 1974 | 1971 |
| 製品別 | 328 | 176 | 206 | 83 |
| 事業部別 | 137 | 144 | 106 | 88 |
| 產業別・顧客別 | 26 | 29 | 18 | 13 |
| 地域別 | 24 | 20 | 10 | 12 |
| | 515 | 369 | 340 | 196 |
| 部門別情報 공개 회사의 數 | 449 | 375 | | |
| 공개하지 않는 회사의 數 | 151 | 225 | | |
| | 600 | 600 | | |

豫測情報(forecasts)는 1973年 美國證券去來委員會에서 企業이 제출하는 會計報告書에 利益豫測(profit projection)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 뒤로 企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다.⁽⁶⁸⁾

物價水準變動情報(price-level change information)는 1969年 發표된 美國公認會計士會 APB Statement No. 3에서는 “物價水準變動에 의하여 修正된 時價表示財務諸表는 歷史原價(historical cost)로 기록된 財務諸表에서 얻을 수 있는 有用한 情報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으며 “歷史原價의 財務諸表와 함께 표시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⁶⁹⁾ 그러나 “현재로서는 物價水準變動情報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의해 작성이 强制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指針에 따라 美國 대부분의 企業은 物價水準變動情報률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企業에 따라서는 補充明細表로 財務諸表註釋에 또는 監查報告書에 간단히 기재하고

(67)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 op. cit., p.38

(68) Kieso and Weygandt, op. cit., p.1080

(69) AICPA, APB Statement No.3,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 (New York, AICPA, 1969)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趨勢·技術調查報告書」에 의하면 1974年 調查對象 600개 기업 중 Shell Oil Company 등 2개 회사가 歷史原價에 의한 財務諸表에 추가하여 补充情報로서 物價水準에 의해 수정한 財務諸表를 발표하고 있다. 또 11個 회사가 자발적으로 營業報告書에 物價水準에 의해 수정한 會計情報률 나타내고 있다.⁽⁷⁰⁾

社會意識支出(social awareness expenditures)은 강제로 공개하도록 會計規定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1970年 傾부터 環境問題에 관한 社會的 關心이 高潮되면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趨勢·技術調查報告書」에 의한 社會意識支出을 공개한 기업의 數는 <表-5>에 나타나 있다.⁽⁷¹⁾ 여기서는 社會意識支出이 6가지로 나누어 집계되어 있으며 1970年 105個, 1971年 100個, 1972年 101個, 1973年 80個, 1974年 56個로 차차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닉슨大統領이 1968年 年頭 教書(State of the Union Message)에서 環境污染의 抑制를 호소한 이래 기업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1970年 초반에는 많은 기업이 社會意識支出을 공개하였으나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表-5> 社會意識支出을 公開하는 企業의 數(美國)

| | 1974 | 1970 |
|-----------------|------------|------------|
| 教育機關에 대한 援助 | 34 | 35 |
| 病院·保健·其他 地域活動援助 | 19 | 28 |
| 少數集團에 대한 援助 | 7 | 14 |
| 慈善機關에 대한 援助 | 19 | 19 |
| 失業者救濟援助 | 13 | 65 |
| 都市發展計劃援助 | 3 | 15 |
| 其他 | <u>20</u> | <u>16</u> |
| | <u>115</u> | <u>192</u> |
| 社會意識支出을 公開하는 企業 | 56 | 105 |
| 公開하지 않는 企業 | <u>544</u> | <u>495</u> |
| | <u>600</u> | <u>600</u> |

社會意識支出의 公개가 의미하는 바는 投資者와 一般大衆인 財務諸表利用者들은 기업에서 社會的 責任을 다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社會에서 벌어지는 利益을 社會에 還元할 것을 요구하는 倫理的 憲지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會計情報公開의 效果는 建設的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데 美國의 教會機關인 United Church of Christ에서는 教會資金을 投資하기 전에 企業의 社會意識을 조사하여 投資하는 方針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⁷²⁾

(70)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 op. cit., p.88

(71) *Ibid.*, p.301

(72) Kieso and Weygandt, op. cit., p.1078

美國에서 會計情報의 公開에 중요한 역할을 한 機關으로는 美國公認會計士會, 美國會計學會, 美國證券去來委員會, 財務會計基準審議會가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ARB, APB Opinions, Statements를 中心으로 公開事項을 규정하고 있고, 公開事項은 會計監查基準報告書(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에도 규정되어 있다. 美國會計學會에서는 ASOBAT 以後 컴퓨니케이션理論의 강조로 財務諸表利用者中心의 會計를 중요시하였으므로 당연히 公開事項問題가 강조되었다. 美國證券去來委員會는 Regulation S—X에 公開事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財務會計基準審議會는 會計原則審議會를 계승하여 財務情報에 관한 會計規定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FASB Statement, FASB Exposure Draft, FASB Discussion Memorandum, FASB Interpretation을 발간하고 있다. 會計情報의 公開에 관해서 중요한 것으로는 外國通貨換算의 公開(disclosure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information)에 관한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 重要性(Materiality)에 관한 FASB Discussion Memorandum이 있으며, 앞으로 物價水準變動情報, 部門別財務報告에 대해서도 報告書가 나올 예정이다.

2. 우리나라의 會計規定에 대한 批判

會計情報의 公開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會計規定으로는 商法, 財務諸表規則,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 韓國公認會計士會의 監查報告準則이 있다.

(1) 商 法

商法에서는 株式會社의 計算書類인 財產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營業報告書, 準備金·利益과 利子의 配當에 관한 議案을 定期株主總會의 1주일전부터 監事(statutory auditor)의 意見書와 함께 本店에 비치한다고 하여 公示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第 449條에서는 計算書類가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代表理事는 곧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貸借對照表만을 公開하는 商法規定은 사실상 意味가 없다. 企業에서 중요한 것은 營業活動의 要約인 損益計算書이며 財務諸表註釋과 같은 公開事項이 없으면 財務諸表利用者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에는 證券去來法 施行規則 第25條에 의거 貸借對照表 公告時 會計監查人の 意見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會計情報의 公開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一步前進한 것이다.

(2) 財務諸表規則

財務諸表規則은 1958年 制定된 것으로 會計情報의 公開事項은 數的으로 매우 적다. 이 規定에서는 公開事項을 10가지의 註釋事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貸借對照表註釋事項 9가지, 損益計算書註釋 1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規定에 대한 批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財務諸表規則의 公開事項은 財務諸表註釋事項에 한정되고 있는데 公開事項에는 그외에도 財務諸表註釋, 財務諸表의 樣式·配列, 补充明細表, 監查報告書 등 여러 가지 公開方法이 있다.

둘째로, 열 가지의 財務諸表註釋事項 중에서 절반정도는 科目的 分류나 備忘的 内容으로 公開事項이 될 만한 것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流動資產에 區分하기 곤란한 科目은 固定資產으로 區分한다고 하는 것은 科目的 分類에 속한 것이다.

셋째로, 財務諸表註釋事項을 貸借對照表註釋과 損益計算書註釋으로 나누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생각된다. 10가지의 註釋事項 중에는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 동시에 관련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資產의 評價基準과 在庫資產의 價格決定方法은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넷째로, 財務諸表規則은 1958年 制定·發表되고 1963年 單1回 改正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財務諸表利用者의 變化된 時代的情報要求나 多目的 情報要求를 充足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財務諸表規則은 일단 制定되면 不變한다는 固定性을 脱皮해야 하며 變化되는 情報要求에 따라 伸縮的으로 改正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財務諸表規則은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開事項이 다른 規定과 비교하여 부족하므로 追加되어야 할 公開事項이 많다.

다섯째로, 會計情報의 公開에 있어서 財務諸表規則 보다는 附屬明細書를 중요시하고 있다. 財務諸表規則에는 10가지 註釋事項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附屬明細書는 47가지나 된다. 貸借對照表附屬明細書는 强制規定에 의한 것이 15가지, 任意規定에 의한 것이 7가지, 損益計算書는 25가지가 작성된다. 附屬明細書는 分量으로 보나 商法上의 규정에 의해 利害關係者가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비추어 會計情報의 公開라는 觀點에서 보면 重要性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註釋事項의 擴充이 요망된다.

여섯째로, 註釋事項의 選定基準이 명확치 않다. 註釋事項의 選定에 있어서 論理的 根據나 原則(principle)이 없이 無分別하게 나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缺點을 財務諸表規則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政府에서는 企業會計原칙과 財務諸表規則을 改正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새로운 財務諸表規則에서는 理論的으로 妥當한 原則下에서 會計情報의 公開事項을 규정하고 現存의 會計規定보다도 公開 범위를 擴大할 것으로 기대한다.

(3) 上場法人 等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

證券去來法 施行令 第126條에 의거 발표된 「上場法人 等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에서는

〈表-6〉會計情報公開事項에 관한諸規定의 比較

| 上場法人等의 財務 諸表에 관한 規則 | | 財務諸表規則 | | 監查報告準則 | |
|---------------------------|----------|------------------|---------------|--|--|
| 減價償却方法 | 없음 | 없음 | 없음 | Opinion No. 12 & 22 | ARB No. 43, Opinion No.22 |
| 在庫資產價格決定 | " | " | 있음 | ARB No. 43, Opinion No.22 | Opinion No.6 |
| 資產의 評價 | " | " | 資產評價, 資產再評價基準 | Opinion No.17 & 22 | Opinion No.17 & 22 |
| 無形固定資產·移延資產償却 | " | 없음 | " | Opinion No.22 | Opinion No.22 |
| 收益의 認識方法(長期工事契約) | " | " | " | Opinion No.22, FASB Statement No.1 | Opinion No.22, FASB Statement No.1 |
| 外國通貨의 換算 | " | " | " | Opinion No.22 | Opinion No.22 |
| 研究開發費 | " | " | " | Opinion No.22 | Opinion No.22 |
| 解説(의 基礎) | " | " | " | 巨額의 外國借款만 규정 실무상 註釋에 기재함, 규정은 없음 | 巨額의 外國借款만 규정 실무상 註釋에 기재함, 규정은 없음 |
| 債權者請求權(長期借入金內譯) | 106조 | 附屬明細書 | 附屬明細書 | APB Statement No.4 | APB Statement No.4 |
| 株主請求權(利益配當의 制限) | 83조 | " | 없음 | ARB No.50 | ARB No.50 |
| 個貸債務 | 44조, 75조 | " | 있음 | APB Statement No.4 | APB Statement No.4 |
| 未確定契約(長期推定債務) | 없음 | " | 없음 | " |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No.1 |
| 財務諸表作成日後 發生사항 | 83조 | " | " | Opinion No.6 | Opinion No.6 |
| 自己株式의 取得 | 42조 | " | " | 없음 | 없음, 실무상 註釋에 기재함 |
| 擔保資產 | 65조 | 담보로 채 공한 유가증권판규정 | " | Opinion No.15, APB Statement No. 10-K | Opinion No.15, APB Statement No. 10-K |
| 株當利益額 | 없음 | " | 없음 | APB Statement No.2, SEC Form 1973 | APB Statement No.3 1973 SEC proposal |
| 部門別財務報告 | 8조에 | 임의 규정 | " | Opinion No.11 | Opinion No.11 |
| 物價水準變動情報 | 없음 | " | " | Opinion No.28, SEC Form 10-K | Opinion No.28, SEC Form 10-K |
| 豫測情報 | " | " | " | 없음 | 없음 |
| 法人稅의 配分 | " | " | " | ARB No.43, ch.2 | ARB No.43, ch.2 |
| 中間報告書 | " | " | " | | |
| 人的資源 | " | " | " | | |
| 比數財務諸表 | " | " | " | | |

財務諸表規則에 비하여 많은 註釋事項을 賦課시킴으로써 會計情報의 公開範圍를 넓힌 점이 중요한 發展으로 評價된다. 이 規則 第83條에서는 8가지의 註釋事項을 규정하였고 第106條에서는 7가지의 聯結財務諸表註釋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그외에도 規則의 각 項目마다 會計情報의 公開事項을 여러 곳에 規定함으로써 종래의 財務諸表規則보다도 公開事項이大幅으로 증가된 결과가 되었다. 規則 第5條에서는 註釋 및 註釋方法을 구체적으로 规정하고 있고 附屬明細書도 數的으로 증가하여 貸借對照表附屬明細書는 26가지, 損益計算書附屬明細書는 9가지를 規定하였다. 그외에도 規則의 각 항목마다 重要性(materiality)의 원칙에 입각하여 一定水準에 未達하거나 超過하면 公開에 있어서 별도의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半製品·副產物·作業廢物 등의 賣出額合計額이 賣出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는 規定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에서는 많은 公開事項이 추가되므로 종래 規定의 公개사항보다는 括目할 만한 발전을 이루하였다. 또 從來에는 公開事項이 될 수 없는 것까지도 고려하였으나 規則에서는 第83條에 重要한 會計政策, 財務諸表作成日 以後 發生한 事項 등도 기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公開事項의 質的인 内容에 있어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發展에도 不拘하고 다음과 같은 點에서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은 비판된다.

첫째로, 앞서의 財務諸表規則에 대한 批判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에 承繼되어 왔다. 備忘計定을 公開事項에 포함하고 있으며,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註釋事項으로 註釋事項을 區分하고 있고, 附屬明細書를 尊重하는 點은 아직도 同一하다.

둘째로, 重要性의 原則에 관하여 일정한 基準이 없이 $\frac{2}{100}$, $\frac{5}{100}$, $\frac{10}{100}$, $\frac{20}{100}$ 등의 數量基準을 劃一的으로 適用한 점이다. 이 重要性基準은 規則의 곳곳에 數量的으로만 规정되어 있는데 重要性을 概念的으로 定義하지 않고任意로 重要性의 범위를 區分하였다.

重要性에 있어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資產의 몇 %, 各 計定科目의 몇 %로 重要性을 定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純利益의 몇 %는 고려되지 않았다. 公開하느냐 안하느냐의 決定은 純利益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外國에서 制度化된 比較財務諸表, 資金運用表, 聯結財務諸表의 중요성이 아직 덜 認識되어 있다. 美國의 경우 資金運用表는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함께 基本的 財務諸表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附屬明細書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從來의 財務

諸表規則에서는 資金運用表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一步前進한 것이나 重要度의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企業은 財閥企業의 形態로 발달하여 있으므로經濟的으로는单一企業의 성격이 濃厚하다. 따라서 여러 系列企業의 分散된 會計情報들을統合하여 한 그룹으로서 財務情報들를 公開해 주는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의 作成義務를 擴大하여야 할 것이다.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만으로는 作成義務를 회피할企業이 많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企業의 數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近刊의 新聞報道에 의하면 10여개企業만이 聯結財務諸表作成義務를 갖게 된다고 한다.

넷째로, 公開範圍의 擴大가 필요하다. 財務諸表利用者の 요구가 多樣化되어 가고 있다. 이 規則에서는 종래보다 公開事項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外國에서 公開事項이 되었거나 고려되고 있는 借入金內釋, 株當利益額, 部門別財務報告,豫測情報, 物價水準變動情報, 中間報告書 등의 公開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로, 漏落된 公開事項에 관한 綜合的인 檢討를 하여 公開事項의 選定 등 公開에 대한 原則을 세워야 할 것이다. <表-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減價償却方法, 在庫資產價格決定方法 등 純利益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公開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각 規定別로 公開事項이 상이하게 나열되어 있다. 또 公開해야 될 事項이 公開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로, 概念的 定義를 명확히 하지 않은 規定에 대해서는 그 뜻을 확실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 第83條에서 重要한 會計政策은 그 내용을 貸借對照表에 註釋으로 기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重要한 會計政策이 規定上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막연한 規定은 死文化된 規定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重要한 會計政策은 APB Opinion No.22처럼 구체적으로 例示함이 필요하다.

일곱째로, 우리나라 會計規定의 生成過程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財務諸表規則은 1958年 財務部長官의 諮問機關인 財政金融委員會의 分科委員會인 企業會計制度分科委員會에서 制定하여 財務部告示로 발표된 것이다.⁽⁷³⁾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은 1973年 財務部長官의 命에 의하여 韓國投資公社社長의 委嘱으로 설립된 企業會計制度審議會에서 그抄案을 작성하였다. 그후 改正된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證券審議委員會가 발족되었으며, 企業會計分科委員會에서 그 내용을 확정하여 1975年 4月 財務部令으로 公布되었다. 이러한 制定經緯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露呈되고 있다. 會計規定을 制定하는 人的構成에 있어서 會計에 관한 專門的 識見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公認會

(73) 우리나라 會計規定에 대한 制定經緯는 李海東著 財務諸表規則解說 (1975年 全訂版), 一潮閣, 1975年 5月 pp.1-5에 記述되어 있음

計士中心의 會計實務擔當者로 구성되어 있고 美國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처럼 광범위한 利害關係者層의 代表나 常任의(full-time) 委員으로 구성되지 않은 점, 會計原則審議會(APB, Accounting Principles Board)가 解體되고 FASB이 新設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APB의 構成에 있어서 重要利害關係機關을 網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例를 들면, APB는 APB에 참여하지 않았던 美國財務經營者協會(FEI,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와 SEC로부터 끊임없이 批判을 받아 왔었다. 또 會計規定의 制定에 있어서 新設의 會計規定에 대한 상세한 檢討, 抄案의 供覽, 公聽會의 개최 등 充分한 討議過程을 거쳐서 그 内容을 研究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重要한 會計規定이 批判되지 않고 확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上場法人 등에 관한 會計處理規程에 있어서는 公聽會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나라 會計規定은 일단 정해지면 長期間 改正되지 않으므로서 企業의 環境變化나 時代的 要請을 反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會計規定의 改正을 伸縮的으로 하기 위하여 常設的인 會計制度審議機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會計規定은 지금까지 日本의 會計規定을 모방해 온 경향이 있었는데 美國, 英國 등 좀더 발전된 나라의 會計制度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現實에 맞는 公開의 原則, 會計原則을 定立할 필요가 있다.

(4) 監查報告準則

韓國公認會計士會 會計監查研究委員會에서는 1972年 11月 監查報告準則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財務諸表規則에서 정한 註釋事項이 외에 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規定하였다. 監查報告準則에서는 財務諸表에 규정되지 않은 減價償却方法, 移延資產償却, 從業員退職金, 企業所得과 課稅所得의 差異, 財務諸表作成日以後에 發生한 事項 등 많은 公開事項을 포함하고 있다. 또 重要性의 概念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定義하였다. 즉 監查意見上 重要性의 판단기준으로 監查意見의 除外事項이 賣出總利益의 2% 내지 3%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며例外的인 경우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監查報告準則은 다음과 같이 批判된다. 첫째로, 監查報告準則·會計監查基準 등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 제정한 基準이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監查基準(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監查報告準則은 會計監查를 主業務로 하여所得을 얻는 公認會計士들에 의하여 制定된 것으로 財務諸表利用者들의 權益을 代辯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監查報告準則은 公認會計士들에 대한 實務指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各界各層의 財務諸表utilization者들에게 目的適合한 會計情報 to 전달한다는 견지에서 制定된 것은 아니다.

둘째로, 監査報告準則의 法的 強行力과 公認會計士들의 遵守與否가 문제된다. 1961年 발표된 會計監査基準制定에 대한 韓國公認會計士會의 趣旨文에 따르면 “社會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범이 되며 監査인이 準據하여야 할 原則으로 會計監査基準을 制定할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監査人은 企業側이 會計規定에 의한 最少限度의 公開事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 監査人이 監査報告準則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公開를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사된다.”

셋째로, 監査報告準則에 열거된 公開事項은 完全한 리스트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과 동일한 점에서 비판된다.

〈表-6〉은 우리나라의 會計規定과 美國의 會計規定을 對照 表示한 것으로 公開事項이 項目別로 規定되어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會計規定에는 重要한 會計政策에 속하는 사항이 거의 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物價水準變動情報 등 會計情報公開의 새로운 분야는 거의 규정되지 않고 있다. 財務諸表規則은 制定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公開事項의 규정에 있어서 가장 적은 편이며 監査報告準則이나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에 補完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會計規定은 美國의 規定에 비하여 不足하고, 상세하지 못하며, 充分히 토의되어 규정되지 않았다.

3.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監査意見의 分類와 分析

會計監査人이 財務諸表의 適否를 판정하여 발표하는 監査意見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無限定, 限定, 不適正, 無意見으로 구분하고 있다. 現在 證券去來所에서는 不適正, 無意見의 판정을 받은 企業에 대해서는 일단 特別포스트種目으로 지정하여 投資者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有償增資·新規信用供與의 中止 등 직접적 制裁를 가하고 있다. 기업이 일단 이러한 판정을 받으면 證券去來所의 직접적 制裁의에도 株價, 借款회득, 회사 이네이지의 損傷 등 여러 가지 不利益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限定意見의 판정을 받고 있다.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限定意見을 받은 기업은 1974年 140個기업(85%), 1975年 100個 기업(72%)으로 上場法人中 절대다수를 차지한다.⁽⁷⁴⁾

이것은 美國과 정반대 현상으로 美國에서는 上場會社 600個中 510個會社인 85% 정도가 無限定意見의 판정을 받고 있다.⁽⁷⁵⁾

우리나라에서 限定意見이 이렇게 많이 발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는 대

(74) 韓國證券去來所刊, 「上場會社企業內容公示」, 1975年 12月과 大韓證券業協會刊, 「證券」, 1976年 3月 第8號를 참고함

(75)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1974, 28th ed. (New York: AICPA, 1974) p.410

략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表-7〉 上場會社에 대한 監查意見(單位 : 會社의 數)

| | 우리나라 | | 美 國 | |
|---------|------------|------------|------------|------------|
| | 1975 | 1974 | 1973 | 1970 |
| 無限定意見 | 24(17%) | 15(9%) | 509(85%) | 515(86%) |
| 限 定 意 見 | 100(72) | 140(85) | 91(15) | 83(14) |
| 不適正意見 | | 8 (5) | — | — |
| 無 意 見 | 16(11) | 2 (1) | — | 2(1%미만) |
| | <u>140</u> | <u>165</u> | <u>600</u> | <u>600</u> |

첫째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에서 발생한다. 〈表-8〉에 나타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는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稅務會計가 企業會計에 우선한다는 風潮가 지배적이어서 기업의 會計實務는 稅務會計中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企業會計의 目的에 충실하는 會計監查人이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退職給與充當金, 固定資產의 特別償却,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이 그 대표적例이다. 이들은 決算期가 1974年度인 監查報告書에는 많이 나타났었으나 1975年度에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것은 限定事項이 아니라는 財務部의 指示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가 인위적으로 좁혀질 수 있을지 모르나 稅務會計가 企業會計를 따르는 것이 正道인 것이다. 美國의 證券去來法이나 稅法이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意見書가 나온 후에 改正되어 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熟考해 보아야 할 것이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가 限定事項으로 공개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은폐되고 만다. 某市中銀行의 1975年 3月의 財務諸表를 보면 44億원의 退職給與充當金이 過少表示되었다. 當期純利益은 21億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當期純損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15%의 利益配當이 행해졌고 限定意見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銀行의 財政的基礎를 극도로 위태롭게 한 것이며 純利益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公認會計士가 발표한 限定意見보다는 不適正意見이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監查報告書作成의 統一的 基準의 不在, 技術的 理由로 인하여 限定・不適正・無意見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監查報告書를 분석해 보면 제각기 다른 基準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監查實務에서 보면 동일한 會社에 대해서 監查인이 다르면 다른 監查意見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원래 監查報告書에 기재되는 限定事項이란 財務諸表 表示金額의 不確實性(uncertainties), 適正表示(fair presentation)의 위반, 會計政策의 變更으로 인한 繼續性(consistency)의 준수

〈表-8〉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

◇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乖離事例⁽⁷⁶⁾

| 事例 | 稅務會計 | 企業會計 |
|--|--|---|
| 1. 固定資產에 대한 特別償却 ① 特別償却 ② 偿却方法 ③ 收益의支出과 資本의支出 | ▲損金처리 규정(令51조) 年平均 매일 12시간이상 사용된 기계설비(對象은 財務部令)등 6가지 사례 ▲신고한 偿却방법(令50조) ▲회일적 기준설정 | ▲特別償却不認定 ▲임의 선택한 방법(제23조) ▲기업규모와 상태에 따라 상이 |
| 2. 充當金 및 準備金 ① 貸損充當金 ② 退職給與充當金 | ▲損費제 한 항목 外上賣出金, 貸與金 등 帳簿價額會計額의 1%한도. 緑色申告法人은 2%(令18조) | ▲費用項目 당해기업의 業種 및 實績에 따라 計上 |
| ③ 海外市場開拓準備金 ④ 輸出損失準備金 ⑤ 海外投資損失金 | ▲損金제 한 항목 ○ 1년간勤續한 使用人에게 지급한 總給與額의 1%상당금액 損金처리(令18조) ○ 退職給與充當金의 累積額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使用人전원이 퇴직할 경우 退職給與로 지급되어야 할 推計額의 50%한도 | ▲內部退職給與 규정에 의 거 計上(제95조) |
| 3. 在庫資產의 評價方法 | ▲損金制限項目 당해 사업연도의 輸出 및 用役事業에서 취득한 外貨收入金額의 1%범위내에서 損金처리(法12조의 2) | ▲非費用項目 |
| 4. 資本剩餘金 항목의 損金처리 ① 工事負擔金 ② 保險差益 | ▲損金制限項目 당해 사업연도의 輸出 및 觀光事業에서 취득한 外貨收入金額합계의 1%와 당해所得金額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내에서 損金처리(法12조의 4) ▲損金制限項目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海外投資額의 10%범위 損金處理(法 12조의 5) | ▲非費用項目 ▲非費用項目 |
| | 신고한 評價方法에 의거처리(法 29조, 令 85, 86조) | ▲企業의 형태에 따라 自主的評價方法을 선택 |
| | ▲益金不算入項目 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固定資產에 대해,當該價額의 90%범위 損金처리(法 14조의 2) | ▲資本剩餘金項目 |
| | ▲益金不算入項目 保險差益으로 취득한 固定資產 또는 損 | ▲資本剩餘金項目 |

(76) 上場會社協議會 會計制度研究委員會에서 발표한 資料에 依據함.

| | | |
|---|---|---|
| ③ 國庫補助金 5. 寄附金 및 接待費 ① 寄附金 ② 接待費 | <p>壞된 固定資產을 개량하는 경우 所得金額 계산상 損金처리(法 14조의 3) ▲益金不算入項目 國庫補助金으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경우 지급금액의 90% 범위내 損金 처리(法 14조의 4)</p> <p>▲損金制限項目 1. 각사업연도 所得金額의 5% 2. 月平均資本金의 1%(50억원을 한도로 함) ▲損金制限項目 接待費損金처리의 범위 설정(法18조의2) 다음 금액의 합계額 초과분은 損金처리不認定 1. 100만원에 당해사업연도의 月數를 곱하여 이를 12로 나눈 금액 2. 月平均자본금의 2% 3. 당해년도 收入金額의 0.4%</p> | 壊된 固定資產을 개량하는 경우 所得金額 계산상 損金처리(法 14조의 3) ▲益金不算入項目 國庫補助金으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경우 지급금액의 90% 범위내 損金 처리(法 14조의 4) <p>▲費用項目</p> <p>▲費用項目</p> |
|---|---|---|

◇ 註「法」은 法人稅法, 「令」은 法人稅法施行令, 「程」은 上場會社등의 會計처리에 관한 규정, 「則」은 財務諸表規則의 略字임.

여부를 밝히는 것이 主要內容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監查報告書에서 除外事項이라고 내세운 많은 것이 無限定意見에 속한 것으로 특별히 監查報告書에 기재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순한 計定科目的 구분(長期借入金中 1年以内 도래액을 短期借入金으로 구분), 중요성의 원칙에 어긋난 사소한 金額의 表示, 財務諸表作成基準과 같은 不必要한 事項은 事實上 限定事項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筆者の 分析에 依하면 우리나라 監查報告書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除外事項은 計定科目的 區分인데 이것은 企業의 純利益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大部分이며 監查人の 권고에 따라 被監查企業에서도 쉽게 修正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監查報告書作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註釋과 除外事項이 혼동되고 있으며, 많은 修正分介를 除外事項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註釋은 財務諸表上 表示할 수 없었던 會計政策이라든가 量的으로 表示할 수 없는 事項을 記述的으로 설명해 주는 補助的 資料인 것이며 除外事項은 被監查企業이 不適正한 會計處理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이 財務諸表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함으로써 特別히 財務諸表利用者的 注意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修正分介는 除外事項이 될 수 없으며 30개, 40개의 修正分介를 나열하는 것은 註釋이든 限定事項이든 좋은 공개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財務諸表利用者가 會計에 관한 專門的 知識을 갖추고 있는 것을前提로 하나 많은 財務諸表利用者는複式簿記의 기본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註釋이나 限定事項은 알기 쉽고, 簡明하며 叙述的으로 하일라이트해야 하는 特性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할 것이다.

監查報告書작성의 統一的 基準의 不在는 구체적 實務指針을 마련함으로써 解決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監查意見의 判定에 있어서 重要性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 純利益의 5%以上 영향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아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監查報告書에 대해서 上場會社側과 證券界에서 異議가 제기되고 再審·再監查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위에 기술한 統一的 基準의 不在 등 여러 要因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셋째로, 企業의 會計組織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會計帳簿의 記帳상태가 不良하므로서 限定·不適正·無意見이 발표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内部統制組織(internal control system)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會計處理를 하지 않는 수도 있다. 減價償却이나 貸損償却을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한다. 그외에도 고객의 信用상태가 不良하므로서 생기는 回收不能債權이 많은 것도 우리나라의 특유한 현상이다. 기업에서 이러한 回收不能債權을 모두 貸損償却하여야 하겠지만 그 金額이 거액에 달하므로 과감하게 整理하지 않으므로서 公認會計士의 지적까지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上場會社의 監查報告書에 나타난 除外事項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筆者が 1974年, 1975年이 決算期末인 上場會社의 監查報告書를 중심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表-9>와 같다. 두 해에 걸친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企業에 있어서 減價償却費, 外貨負債·外換調整計定, 貸損充當金 설정, 在庫資產評價, 法人稅 등 諸稅金, 退職給與充當金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退職給與充當金의 순위가 1975年表에서 내려간 것은 앞서 말한 事由로 인한 영향때문이며 1975年度에 退職給與充當金을 過少設定한 33個會社는 대부분 法人稅法上의 退職給與充當金 규정에도 부족하게 계상하였기 때문에 지적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除外事項으로 지적된 것은 대부분 정상적去來에서 발생한 會計政策(accounting policies)에 속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한편 美國의 경우 除外事項으로 지적되는 것은 <表-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不確實性에 관련된 訴訟事件, 資產評價, 法人稅紛爭으로 인한 未確定債務와 會計上 繼續性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1974年度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極少化하기 위하여 後入先出法의 선택, 研究開發費의 처리방법변경, APB Opinion No. 30에 의한 계정과목

〈表-9〉 監査報告書에 나타난 除外事項

| 限定・不適正・無意見事項 | 1975年(124개 기업) | | 1974年(165개 기업) | |
|--------------------|----------------|----|----------------|------|
| | 會社의 수 | 順位 | 會社의 수 | 順位 |
| 減價償却費의 過少 過大계상 | 52(42%) | 1 | 79(48%) | 2 |
| 外貨負債・外換調整計定의 過少계상 | 47(38%) | 2 | 61(37%) | 3 |
| 貸損充當金의 過少설정 | 42(34%) | 3 | 57(35%) | 4 |
| 法人稅・住民稅・營業稅의 過少계상 | 36(29%) | 4 | 33(20%) | 5 |
| 在庫資產의 過大 過少계상 | 36(29%) | 4 | 30個(18%) | 未算 6 |
| 退職給與充當金의 過少설정 | 33(27%) | 6 | 115(70%) | 1 |
| 그외에 30個會社 미만의 사항 | | | | |
| 재고자산의 수정 | | | | |
| 고정자산의 평가 | | | | |
| 이연자산의 상각 | | | | |
| 무형고정자산의 상각 | | | | |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제준비금 | | | | |
| 미실현이익의 계상 | | | | |
| 소송사건 | | | | |
| 고정자산 처분이익 | | | | |
| 내부통제제도의 不備 | | | | |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혼동 등 | | | | |

〈表-10〉 限定事項(美國) 600個 上場企業에 對한 調査⁽⁷⁷⁾
(同一會社 증복포함)

| | 1974 | 1973 | 1972 | 1971 |
|----------------------------------|------|------|----------|------|
| 不確實性에 관한 사항 : | | | | |
| 訴訟사건 | 32 | 25 | 32 | 20 |
| 資產評價 | 16 | 13 | 18 | 23 |
| 法人稅紛爭 | 11 | 10 | 3 | 15 |
| 其　他 | 17 | 15 | 22 | 17 |
| 小　計 | 76 | 63 | 80 | 75 |
| 繼續性에 관한 사항 : | | | | |
| 後入先出法의 선택 | 192 | 7 | — | 3 |
| 研究開發費의 처리방법 | 22 | — | 調査된 바 없음 | — |
| APB Opinion No.30에 의거한 계정과목분류 | 14 | 10 | — | — |
| 聯結政策 | 8 | 10 | 15 | 19 |
| 其　他 | 33 | 60 | 89 | 113 |
| 小　計 | 269 | 87 | 104 | 125 |

분류의 변경에 대해 많은 限定事項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會計原則의 변경으로 1974年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77)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 op. cit., p.410

우리나라 監査報告書에 나타난 除外事項은 기업의 純利益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除外事項과 純利益의 관계만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經營者나 회계담당자의 會計處理의 心리를 명확히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上場會社의 監査報告書에 나타난 除外事項을 각 會社別로 當期純利益에 영향주는 金額을 합계하여 집계한 결과 <表-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74, 1975년이 決算期末인 上場會社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純利益을 높이는 방향으로 會計處理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企業은 종래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節稅를 하기 위하여 純利益을 적게 표시하는 경향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이제는 會社의 經濟的 富(economic)를 높이고자 純利益을 過大表示하는 방향에서 財務諸表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企業價值의 過大評價, 經營者 능력의 過大評價, 株價의 상승, 高率의 利益配當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외국에서처럼 고의로 利益 operation(income manipulation)을 하기 위하여 會計政策을 바꾸거나 變態的 會計處理를 하게 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表-11> 監査報告書의 除外事項이 純利益에 미치는 영향

| | 1975(124個기업) | 1974(165個기업) |
|------------------|--------------|--------------|
| 當期純利益의 過大表示 | 96(77%) | 18個會社(71%) |
| 當期純利益의 過少表示 | 10(8%) | 31 " (19%) |
| 當期純利益에 영향이 없는 會社 | 18(15%) | 16 " (10%) |
| | 124 | 165 |

기업의 會計處理가 純利益의 增大方向으로 처리될 때 會計監査의 重點도 그러한 方向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資產・收益의 과대계상, 負債・費用의 과소계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外上買入金보다는 外上賣出金의 照會가 重要한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며 決算期末以後의 賣出은 次期賣出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當期賣出로 하려는 意圖를 띠는 year-end cutoff이 중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VII. 結論과 建議

本稿는 財務諸表의 目的이 財務諸表利用者가 經濟의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有用한 情報를 제공하는데 있다는前提下에서 會計情報의 公開本質, 公開範圍, 公開事項의 選擇, 公開實態의 分析과 評價를 하였다. 會計情報의 公開範圍가 擴大되는 原因과 새로이 등장한 公開托庇들에 대해서도 言及하였다. 여기서 다룬 많은 토픽들은 아직 명확히 定義된 바

없지만 會計報告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會計情報의 공개가 論議되고 會計規定이 制定되어야 할 것이다.

會計報告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建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會計情報의 公開趨勢에 맞추어 현재의 會計規定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많은 규정을 補完擴充해야 할 것이다. 會計情報에 관한 公開規定이 있는 財務諸表規則,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 監查報告準則은 統一된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全面再檢討하여 補完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會計情報의 公開事項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重要한 會計政策, 社會意識支出, 人的資源,豫測情報, 物價水準情報, 部門別情報, 中間報告書 등 외국에서 이미 制度化되고 있는 새로운 公開托託들을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會計情報의 公開基準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適正公開를 달성하기 위하여 달성 가능한 標準的 公開基準을 세움이 필요하다. 例를 들면, 重要性(materiality)의 개념과 같은 것은 명확히 정의하여 현재와 같이 무질서하게 會計監查報告書가 공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會計情報의 공개는 財務諸表의 註釋뿐만 아니라 財務諸表작성에 사용되는 語彙, 樣式, 配列, 註記, 補充明細表, 監查報告書 등에 관해서도 會計規定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比較財務諸表, 株當利益額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공개되어야 하며 資金運用表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와 함께 基本的 財務諸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會計情報의 公開에 限定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會計原則의 定立過程에 문제점이 있다. 현재 會計原則은 證券去來法 第126條에 의거 證券審議委員會에서 制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投資者保護를 위한 證券去來法에 따라 會計原則이 制定・改正되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會計原則은 모든 利害關係者集團이 参여하고 財務部와 같은 特定 政府機關이 아닌 民間의 研究機關에서 自生的으로 생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學界, 實務界, 政府, 經濟團體, 銀行 등 각 利害關係者集團이 参여하는 美國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같은 기관이 창설되어 討議와 反論을 충분히 거친 후에 會計原則이 개정되고 公開事項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會計原則은 學問的 研究 없이 日本의 會計原則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會計原則을 정립해 가는 것도 앞으로의 課題이다.

여섯째, 會計情報의 公開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公認會計士의 機能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公認會計士는 會計監查人の 傳統的 機能으로 이해되어 온 財務諸表의 適正表示

<fair presentation>에 대한 檢證이라는 檢證機能(attest function)이외에도 會計情報률 적절히 공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公認會計士는 目的適合하고 중요한 會計情報은 공개되도록 經營者와 협력하여 財務諸表制用者의 情報要求(information needs)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主導的役割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會計는 財務諸表의 작성이라는 計算에 충실한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제 會計情報의 공개를 통하여 會計가 經濟發達과 社會發展에 중요한 寄與를 한다는 社會的機能(social function)을 갖는 학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會計는 資源의 最適配分(optimum allocation of resources)을 할 기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社會的責任에 관한 會計情報의 공개에 있어서 教育, 慈善, 保健機關 등 社會厚生施設을 위한 지출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또 社會費用과 社會收益의 測定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社會發展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認會計士는 이러한 會計의機能을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經濟發達과 社會發展을 이룩하기 위하여 會計資料를 檢證하고 資源의 最適配分을 위한 社會的役割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會計情報의 遵正公開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달성되어야 할 課題이다. 크나우스(Knauss)는 “證券去來法의 立法에 있어서 全體構造의 要諦는 公開問題에 있다(The keystone of the entire structure of federal securities legislation is disclosure)”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은 會計情報公開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⁷⁸⁾

(78) Robert L. Knauss, "A Reappraisal of the Role of Disclosure," *Michigan Law Review*, Feb. 1964, p.607